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공 보

**제587호 2017. 4. 12.(수)**

선 결	기관의 장

## 규 칙

거창군 규칙 제1222호 거창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 3  
 거창군 규칙 제1223호 거창군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 …………… 6

##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17-44호 월곡마을 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 46  
 거창군 고시 제2017-47호 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21호선) 사업 실시계획인  
 가 고시 …………… 47  
 거창군 고시 제2017-48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협조 …………… 49

공 고
-----

거창군 공고 제2017-463호 가지리 교촌마을 도시계획도로(소로2-102호선) 개설공사 보상계획공고 ..... 51

거창군 공고 제2017-476호 2017년 거창군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참여(시공)업체 모집 공고 ..... 59

거창군 공고 제2017-477호 「가천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 63

거창군 공고 제2017-485호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 3단계 조성사업 보상계획 공고 ..... 70

거창군 공고 제2017-487호 금곡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보상계획 열람 공고 ..... 75

거창군 공고 제2017-488호 원봉계~내당도로 확포장공사 보상계획 열람 공고 ..... 78

거창군 의회사무과 공고 제2017-7호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81

거창군 의회사무과 공고 제2017-8호 거창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88

거창군 의회사무과 공고 제2017-9호 거창군립공원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96

거창군 의회사무과 공고 제2017-10호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 입법예고 ..... 103

회 람									
--------	--	--	--	--	--	--	--	--	--

거창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거창군수양등인

2017년 4월 12일

거창군 규칙 제1222호

### 거창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거창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당직근무자의 편성(제6조제2항 관련)

부서명	구 분	당직 사령	당직원	비 고	개정사유
본청	숙직	1명 (6급)	2명		
본청	일직	1명 (5~6급)	2명		
농업 기술센터	일숙직		각 1명		
보건소	일직		1명	숙직 재택당직	
평생 교육센터	일숙직		각 1명	숙직 재택당직 (22:00까지 연장근무)	조직개편 으로 신설
수도사업소	일숙직		각 1명		명칭 변경
문화센터	일숙직		각 1명		조직개편 으로 삭제
한마음 도서관	일숙직		각 1명	숙직 재택당직 (22:00까지 연장근무)	
종합사회 복지관	일숙직		각 1명	숙직 재택당직 (22:00까지 연장근무)	
거창 박물관	일직		1명	숙직 재택당직	
거창사건 사업소	일직		1명	숙직 재택당직	
수송대 관리사무소	일숙직		각 1명		
체육시설 사업소	일숙직		각 1명	숙직 재택당직 (22:00까지 연장근무)	부서명칭 변경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일직		1명	숙직 재택당직	조직개편 으로 신설
거 창 읍	일숙직		각 1명	숙직 재택당직 (22:00까지 연장근무)	
면사무소	일직		1명	숙직 재택당직	

# 거창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17~14
----------	---------

제출연월일	2017. 3. 29.
제 출 자	행정과장

<p><b>1. 제안이유</b></p> <p>백두대간생태교육장 개관과 문화센터 조직 개편 사항 등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당직 관리와 철저한 근무 태세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함.</p> <p><b>2. 주요내용</b></p> <p>가. 당직 부서명 변경함(안 별표)</p> <p style="padding-left: 20px;">(현행)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청소년사업소 ⇒ (변경) 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p> <p>나. 조직개편 사항 반영함(안 별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삭제: 문화센터</li> <li>○ 신설: 평생교육센터, 백두대간생태교육장</li> </ul> <p><b>3. 참고사항</b></p> <p>가. 관계법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7조제5항</li> </ul> <p>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p> <p>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p> <p>라. 그 밖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li> <li>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li> <li>3) 입법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예고기간: '17. 2. 8.~2. 28.</li> <li>나) 예고결과: 의견없음</li> </ul> </li> <li>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li> <li>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li> </ol>
--

거창군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거 창 군 수 양 동 인

2017년 4월 12일

거창군 규칙 제1223호

### 거창군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

거창군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재무회계규칙”을 “거창군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의 예산·결산 및 회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를 삭제한다.

제2조제4항 중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  
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및 「지방회계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1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34조제2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가목부터 하목까지를 나목부터 가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회계책임관 - 기획감사실장

제3조제4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제12조제2항 중 “법 제44조의2”를 “「지방재정법」 제44조의2”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법 제45조 단서”를 “「지방재정법」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한다.

제16조 중 “법 제50조제1항”을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세출예산 월별 집행계획서(지출원인행위계획서, 별지 제13호 서식) 및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세출예산 월별 집행·지출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실과장 및

관서의 장”을 “실과장, 관서의 장 및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본문부터 제4항까지 중 “재무과장”을 각각 “통합지출관, 재무과장”으로 한다.

제22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 출납원과 합의한다.

제25조제2항 중 “재무과장”을 “재무과장 및 통합지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실과장 및 관서의 장”을 “실과장, 관서의 장 및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26조 중 “연 1회”을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법 제50조”를 “「지방재정법」 제5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50조제4항”을 “「지방재정법」 제50조제4항”으로, “재무과장”을 “통합지출관, 재무과장”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지출원”을 “지출원,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재무관”을 “통합지출관, 재무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재무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무과장은 법 제53조제4항”을 “통합지출관은 법 제16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무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이내”를 “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59조의2”을 “시행령 제12조”로 “영 제59조의3”을 “시행령 제14조”로 한다.

제34조제1항 전단 중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해당연도 출납폐쇄 기한”을 “법 제7조에 따라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다음 연도 1월 20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월 10일”을 “다음 연도 2월 10일”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납입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의 처리)** 출납공무원은 시행령 제19조 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에 대하여는 연장된 납부기한인 다음 회계연도의 첫 근무일까지 그 수입금을 금고에 수납할 수 있다.

제38조 중 “영 제78조”를 “시행령 제23조”로 한다.

제3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징수관은 수입금 발생 시에 제50조의3 제1항에 따라 본청 통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40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수입일계표(별지 제29호서식)를 통합지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제3항 중 “통상명령과 송금명령 2종”을 “현금반환명령과 계좌반환명령”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본문 중 “영 제84조”를 “시행령 제30조”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실과장”을 “통합지출관, 실과장”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무과장”을 각각 “통합지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재무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49조 중 “재무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50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삭제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출원(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은 각종 대가 등”을 “지출원 및 출납원, 통합지출관은 각종 지급명령 및 대가 등”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시행령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50조의3제1항 중 “법 제90조”를 “법 제45조”로 한다.

제5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34조”를 “시행령 제53조제2항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3항(종전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합지출관은 필요시 제1항에 따른”을 “통합지

출관은 필요 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제2호의 관서별 필요자금의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통합계좌 자금의 운용 및 관리
2. 제48조에 따른 자금배정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비 및 집합지급은”을 “경비는”으로 한다.

제5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채권자를 확인 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55조제1항 중 “선급금, 송금 및 집합지급에 관하여도”를 “선급금 지급에 관하여”로 한다.

제56조 중 “송금집합 지급명령”을 “(계좌·현금)지급명령”으로 한다.

제57조의 제목 “(통상지급명령의 재발행)”을 “(현금지급명령의 재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통상지급명령서(별지 제55호서식)”를 “현금지급명령서(별지 제55호의2서식)”로 한다.

제59조제1항 전단 중 “법 제72조 및 영 제91조”를 “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38조”로 한다.

제64조제5항 중 “영 제97조제2호”를 “시행령 제45조제2호”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영 제27조”를 “시행령 제26조”로 한다.

제69조의2제2항 중 “재무과장”을 “통합지출관 및 재무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무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70조제4항 중 “재무과장”을 “통합지출관 및 재무과장”으로 한다.

제7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자금의 관리·운용은 통합지출관이 주관한다.

제84조제1항 중 “영 제104조제1항”을 “시행령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업무 일부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7조”를 “법 제3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103조”를 “시행령 제49조”로 한다.

제10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02조부터 제103조까지”를 “시행령 제48조 및 제49조”로 한다.

제108조제1항 중 “통상지급명령”을 “현금지급명령”으로 “통상지급명령통지서”를 “현금지급명령통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상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통지서”를 “현금지급명령 및 현금지급명령통지서”로 한다.

제110조 중 “송금지급명령”을 “계좌지급명령”으로 한다.

제111조를 삭제한다.

제112조제1항제2호 중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서가”를 “현금지급명령서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지급명령한 내역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 통지”를 “현금지급명령통지”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통상지급명령통지”를 “현금지급명령통지”로 한다.

제113조 제목 “(통상지급명령통지의 반환)”을 “(현금지급명령통지의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통상지급명령통지”를 “현금지급명령통지”로 한다.

제120조제1항 중 “감독”을 “관리·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

106조”를 “시행령 제50조”로 “재무과장이”를 “재무과장이 통합지출관의 협조를 받아”로 한다.

제121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 예규)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의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구매의”를 “(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으로 한다.

제128조제1항 단서 중 “행사실비보상금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100만원 이하의 영수인은”을 “행사실비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100만원 이하 영수인 및 채권자에게 계좌송금하는 경우 청구서는”으로 한다.

제129조제2항 중 “회계연도, 회계명, 세출과목”을 “같은 회계 내 세출과목”으로 한다.

제130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무과장”을 각각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131조제1항 중 “지출원”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132조 중 “군수”를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141조 중 “영 제108조”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8조”로 한다.

제150조제1항 중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96조의2”를 “「지방재정법」 제96조의2 및 시행령 제63조”로 한다.

제158조 중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를 “법 및 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부표, 별지 제17호서식의 부표,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8호서식, 제48-2호서식, 별지 제55-2호서식, 별지 제57호서식, 별지 제58호서식, 별지 제63호서식, 별지 제63-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55호서식, 별지 제80호서식을 삭제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2항, 제28조, 제29조,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0조의4제2항, 제69조의2, 제74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거창군 재무회계규칙	거창군 재무회계 규칙
<p><u>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군의 예산·결산 및 재무·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u>제1조의2(다른 법규와의 관계) 군의 예산·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하여 법령, 조례, 규칙으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u></p> <p><u>제2조(정의) ①~③ (생략)</u> ④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과 <u>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회계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u></p> <p><u>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34조제2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각 호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세입세출외현금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u></p> <p style="margin-left: 20px;">1. 본청</p> <p style="text-align: right;"><u>&lt;신 설&gt;</u></p> <p><u>가.~ 하. (생략)</u> 2.~6. (생략) ②~③ (생략) ④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거창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p>	<p><u>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의 예산·결산 및 회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u>&lt;삭 제&gt;</u></p> <p><u>제2조(정의) ①~③ (현행과 같음)</u> ④ ----- ----- ----- ----- <u>---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및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을 포함한다.</u></p> <p><u>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u> ----- ----- ----- ----- ----- 1. --- <u>가. 회계책임관 - 기획감사실장</u> <u>나. ~ 가. (현행 가.~하와 같음)</u> 2. ~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p>



현행	개정안
<p>규칙」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lt;단서 신설&gt;</p> <p>⑤ (생략)</p> <p>제12조(예산안의 편성) ① (생략) ② 제1항의 예산안에 첨부할 서류는 <u>법 제44조의2</u>를 기준으로 하며, 관련 서식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다.</p> <p>제15조(추가경정예산안) ①~② (생략) ③ <u>법 제45조 단서</u>에 따라 실과장 및 관서의 장으로부터 추가 경정예산 성립전 사업비의 사용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은 군수의 결재(세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를 얻어 이를 실과장 및 관서의 장과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예산 배정을 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p> <p>제16조(예산의 이월) 실과장 및 관서의 장은 <u>법 제50조제1항</u>에 따라 명시이월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명시이월요구서를 작성하여 제9조에 따른 예산요구서와 함께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8조(예산배정계획) ① 실과장 및 관서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세입예산 월별 징수 계획(별지 제12호서식) <u>세출예산 월별 집행계획서(지출원인행위 계획서, 별지 제13호서식) 및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u>를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과 재무과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감사실장은 실과 및 관서의 세출예산 월별 집행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고 군</p>	<p>-----<u>따라</u>----- -----<u>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u>----- ⑤ (현행과 같음)</p> <p>제12조(예산안의 편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u>「지방재정법」 제44조의2</u>----- -----</p> <p>제15조(추가경정예산안)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지방재정법」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u>----- ----- ----- ----- ----- ④~⑤ (현행과 같음)</p> <p>제16조(예산의 이월) ----- -----<u>「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u>----- ----- -----</p> <p>제18조(예산배정계획) ① ----- ----- ----- -----<u>세출예산 월별 집행·지출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u>----- ----- ----- ② ----- ----- -----</p>

현행	개정안
<p>수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u>실과장 및 관서의 장</u>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 투자사업의 예산배정에 관하여 미리 기획감사실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③ (생략)</p>	<p><del>-----실과장, 관서의 장 및 통합지출관-----</del></p> <p>③ (현행과 같음)</p>
<p><b>제19조(예산배정 및 통지)</b> ① (생략)</p> <p>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8조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실과장 및 제1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 <u>재무과장</u>에게 세출예산배정통지서(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관서의 요구를 받아 수시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p> <p>③ 실과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제1관서 및 그 밖의 관서의 재무관(분임재무관은 포함한다) 및 지출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예산 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감사실장은 예산 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재무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별지 제14호서식)하고, 그 사실을 재무관 및 지출원과 <u>재무과장</u>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p> <p>④ 실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읍·면에 재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예산 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감사실장은 예산 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무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하고, 그 사실을 실과장 및 제1관서의 장 및 <u>재무과장</u>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p>	<p><b>제19조(예산배정 및 통지)</b>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u>통합지출관, 재무과장</u></p> <p>③ -----</p> <p><u>통합지출관, 재무과장</u></p> <p>④ -----</p> <p><u>통합지출관, 재무과장</u></p>
<p><b>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b>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는 제5조에 규정된 한도에 따라 실과의 경우 재무과장, 관서의 경우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p> <p><u>&lt;단서 신설&gt;</u></p>	<p><b>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b> ① -----</p> <p><u>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u></p>

현행	개정안
<p>1.~8. (생략) ② ~ ③ (생략)</p> <p><b>제25조(실행예산) ① (생략)</b>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b>재무과장</b>과 협의하여 처음 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기획감사실장은 실행 예산이 결정 되었을 경우에는 재무관, <b>실과장 및 관서의 장</b>에게 실행예산의 결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p> <p><b>제26조(집행상황 조사)</b> 기획감사실장과 재무과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각 실과 또는 각 관서의 예산집행 상황을 <b>연 1회</b> 지출내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b>제27조(이월 예산의 집행) ①</b> 실과장 및 관서의 장은 <b>법 제50조</b>에 따른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이월요구서(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서식)를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에 따른 이월요구서를 수합, 심사하고 군수의 결재를 얻어 <b>법 제50조제4항</b>에 따라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 실과장, 재무관 및 지출원, <b>재무과장</b>, 관서의 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p> <p><b>제28조(예산의 전용 등) ① (생략)</b>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 이용, 이체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실과장, 관서의 장, 재무관 및 <b>지출원</b>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령"이라 한다) <b>제38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 출납원과 합의한다.</b></p> <p>1.~8.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p> <p><b>제25조(실행예산) ① (현행과 같음)</b> ② ----- -----<b>재무과장 및 통합지출관</b> ----- ----- ----- ③ ----- -----<b>실과장, 관서의 장 및 통합지출관</b> ----- -----</p> <p><b>제26조(집행상황 조사)</b> ----- ----- -----<b>연 1회 이상</b> -----</p> <p><b>제27조(이월예산의 집행) ①</b> ----- -- 「<b>지방재정법</b>」 제50조----- ----- ----- ----- ----- ② ----- ----- 「<b>지방재정법</b>」 제50조제4항----- ----- ----- -----<b>통합지출관, 재무과장</b> -----</p> <p><b>제28조(예산의 전용 등) ① (현행과 같음)</b> ② ----- ----- ----- ----- --<b>지출원, 통합지출관</b>-----</p>



현행	개정안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가의 예에 따른다.	-----
<p>제39조(출납원의 수납) ①~② (생략)  <u>&lt;신설&gt;</u></p>	<p>제39조(출납원의 수납)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징수관은 수입금 발생 시에 제50조의3 제1항에 따라 본청 통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u></p>
<p>제40조(수입일계표의 작성) 징수관이 제39조와 제106조에 따라 영수필 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수입 일계표(별지 제29호 서식)를 작성하고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p> <p><u>&lt;신설&gt;</u></p>	<p>제40조(수입일계표의 작성) ① -----  -----  -----  -----  -----  <u>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수입 일계표(별지 제29호서식)를 통합지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p>
<p>제43조(과오납금의 반환) ①~② (생략)  <u>③ 과오납금반환명령은 통상명령과 송금명령 2종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u>  ④ (생략)</p>	<p>제43조(과오납금의 반환)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현금반환명령과 계좌반환명령-----</u>  -----  ④ (현행과 같음)</p>
<p>제45조(징수보고서) ① 징수관은 영 제84조에 따라 매월 징수보고서 (별지 제37호 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금고의 세입일계표를 첨부하여 그 다음날 1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여 전산징수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45조(징수보고서) ① --<u>시행령 제30조</u>  -----  -----  -----  -----  -----  -----  -----  -----  ② (현행과 같음)</p>
<p>제47조(자금 수급 계획) ① (생략)  ② 재무과장은 제18조에 따라 실과 및 관서에서 제출한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서와 기획감사실장이 통지하는 세출예산 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 월별 자금지출 종합계획서(별지 제40호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이를 <u>실과장</u> 및 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제47조(자금 수급 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u>통합지출관, 실과장</u>  -----  ③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b>5. 공무원여비</b></p> <p>제50조의3(재정의 통합지출) ① <u>법 제90조</u>에 따른 재정의 통합지출을 위하여 본청에 통합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p> <p>제50조의4(통합지출관의 임무) ① <u>영 제134조</u>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관서별 지출원 및 출납원에 대한 지도·감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3.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b>&lt;신 설&gt;</b></p> <p>② <u>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합지출관은 필요 시 제1항에 따른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u></p> <p>제51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 지급명령을 발하려 할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권자별(인건비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u>경비 및 집합지급</u>은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권자의 청구서를 붙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8. (생략) ②~④ (생략)</p> <p>제54조(채권자의 영수인) ① (생략) ② <u>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 만한 서류 또는 채권자를 확인할 만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u> ③ (생략)</p> <p>제55조(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p>	<p><b>&lt;삭 제&gt;</b></p> <p>제50조의3(재정의 통합지출) ① <u>법 제45조</u> ----- ----- ②~③ (현행과 같음)</p> <p>제50조의4(통합지출관의 임무) ① <u>시행령 제53조제2항제3호</u> ----- ----- 1.~3. (현행과 같음) ② <u>시행령 제53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제2호의 관서별 필요자금의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u> 1. 통합계좌 자금의 운용 및 관리 2. 제48조에 따른 자금배정 ③ <u>통합지출관은 필요 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u> ----- -----</p> <p>제51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 ----- ----- ----- <u>-경비는-</u> ----- ----- ----- 1.~8. (현행과 같음) ②~④ (현행과 같음)</p> <p>제54조(채권자의 영수인)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1항 단서의 경우에 채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u> ③ (현행과 같음)</p> <p>제55조(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p>

현행	개정안
<p>부의 정리구분) ① 일상경비, 개산급,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u>선금급, 송금 및 집합지급에 관하여</u>도 그 뜻을 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부터 제50-3호서식까지)의 위 빈자리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p>	<p>부의 정리구분) ① ----- -----<u>선금급 지급에 관하여</u>----- ----- ②~④ (현행과 같음)</p>
<p>제56조(송금통지) <u>송금집합 지급명령</u>(별지 제55호의2서식) 또는 제51조제2항의 약식 지급명령에 따라 지급시 채권자가 실과 및 각 관서인 경우 송금통지서(별지 제54호 서식)로 통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0조의2에 따라 송금통지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p>	<p>제56조(송금통지) (계좌·현금)지급명령----- ----- ----- ----- -----</p>
<p>제57조(통상지급명령의 재발행) ① <u>통상 지급명령(별지 제55호서식)</u> 또는 공금지급통지서(별지 제56호서식)를 받은 채권자가 이를 망실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재발행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생략)</p>	<p>제57조(현금지급명령의 재발행) ① <u>현금지급명령(별지 제55호의2서식)</u>----- ----- ----- ----- ----- ② (현행과 같음)</p>
<p>제59조(일상경비의 교부) ① 실과장은 배정된 예산에 대하여 <u>법 제72조 및 영 제91조</u>에 따라 일상경비를 교부하여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무과장의 합의를 받아 일상경비 교부통지서(별지 제57호 서식)를 송부하고 지출원에게 일상경비의 교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를 증감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생략)</p>	<p>제59조(일상경비의 교부) ① ----- -----<u>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38조</u>----- ----- ----- ----- ② (현행과 같음)</p>
<p>제64조(개산급의 정산) ①~④ (생략) ⑤ <u>영 제97조제2호</u>에 따른 소송비용을 개산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산을 의무화 하도록 위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법원소송 경비 중 인지대와 송달료의 반환계좌는 군 명의의 계좌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⑥ (생략)</p>	<p>제64조(개산급의 정산) ①~④ (현행과 같음) ⑤ <u>시행령 제45조제2호</u>----- ----- ----- ----- ----- ⑥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68조(수입대체경비출납원) ① 수입대체경비는 <u>영 제27조</u>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로 하고, 수입의 수납·경비의 지출을 위하여 경비별로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을 둔다.</p> <p>② (생략)</p>	<p>제68조(수입대체경비출납원) ① -----  <del>시행령 제26조</del>-----  -----  -----  -----  -----  ② (현행과 같음)</p>
<p>제69조의2(예산초과집행 승인) ① (생략)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에 대하여 승인(별지 제109호서식)을 한 경우에는 승인내역을 <u>재무과장</u>, 승인신청 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u>재무과장</u>은 제2항의 승인분에 대하여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자금을 배정할 경우에는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69조의2(예산초과집행 승인) ① (현행과 같음)  ② -----  -----  <u>통합지출관 및 재무과장</u>-----  -----  ③ <u>통합지출관</u>-----  -----  -----</p>
<p>제70조(예산초과집행) ①~③ (생략)  ④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매월말 현재의 수입대체경비출납현황(별지제110호서식)을 다음달 5일까지 <u>재무과장</u>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70조(예산초과집행)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  -----<u>통합지출관 및 재무과장</u>-----  -----</p>
<p>제74조(자금운용) ①~③ (생략)  ④ <u>자금의 관리</u>는 재무과장이 주관한다.</p>	<p>제74조(자금운용) ①~③ (현행과 같음)  ④ <u>자금의 관리·운용</u>은 통합지출관이 주관한다.</p>
<p>제84조(유가증권의 보관) ① 세입세출의 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을 <u>영 제104조제1항</u>에 따라 구분하고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에 의하여 정리보관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84조(유가증권의 보관) ① -----  -----<u>시행령 제51조제1항</u>-----  -----  -----  -----  ② (현행과 같음)</p>
<p>제89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u>영 제139조</u>에 따른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본청은 재무과장이 그 밖의 관서의 경우에는 회계주무과장 또는 관서장의 장이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p>	<p>제89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u>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실시한다.</u></p> <p>② 제1항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업무 일부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p>하여 출납사무를 검사할 수 있다.</p> <p>제99조(금고의 구분) ① <u>법 제77조</u>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금고 취급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4. (생략)</p> <p>② <u>영 제103조</u>에 따른 공법인인 금융기관의 회원을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서는 금융기관으로 본다.</p> <p>제100조(금고계약의 방법) 군수가 금고 설치약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u>영 제102조부터 제103조까지</u>에 따라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약정을 하여야 한다.</p> <p>제108조(지급절차) ① 군금고 또는 군금고 지출대행점은 <u>통상지급명령</u>을 지참하여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u>통상지급명령통지서</u>와 대조하여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을 하였을 경우에는 <u>통상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 통지서</u>에 연월일과 "지급필"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 (생략)</p> <p>제110조(송금지급절차)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은 <u>송금지급명령</u>을 받았을 때에는 따로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 신속하고는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송금(또는 계좌입금)하고 송금필 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p>제111조(집합 지급 명령) 군금고 또는 군금고 지출대행점은 <u>집합 명령</u>을 받았을 때에는 <u>금액 명세표(별지 제80호서식)</u>에 의하여 송금하여야 하며 그방법과 사무처리는 제110조의 규정에 준한다.</p> <p>제112조(지급의 거부) ①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은 지급명령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지</p>	<p>제99조(금고의 구분) ① <u>법 제38조</u> ----- ----- 1.~4. (현행과 같음)</p> <p>② <u>시행령 제49조</u> ----- -----</p> <p>제100조(금고계약의 방법) ----- -----<u>시행령 제48조</u> 및 <u>제49조</u>----- -----</p> <p>제108조(지급절차) ① ----- -----<u>현금지급명령</u>----- -----<u>현금지급명령</u> <u>통지서</u>----- -----</p> <p>② ----- <u>현금지급명령 및 현금지급명령통지서</u> -----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10조(송금지급절차) ----- -----<u>계좌지급명령</u>----- ----- ----- -----</p> <p>&lt;삭 제&gt;</p> <p>제112조(지급의 거부) ① ----- ----- -----</p>

현행	개정안
<p>급을 거부하여야 한다.</p> <p>1. 재고금을 초과한 때</p> <p>2.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서가 부합되지 아니한 때</p> <p>3. 통상지급명령의 오손으로 통상지급명령통지와 대조하기 곤란한 때</p> <p>4. 집합지급명령과 금액명세표(별지 제80호서식)의 합계금액이 부합하지 아니한 때</p> <p>5. (생략)</p> <p>6. 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 통지의 기재사항을 개서 그 밖에 변경한 흔적이 있는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예외로 한다.</p> <p>7. 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 및 금액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른 때</p>	<p>-----</p> <p>1. -----</p> <p>2. <u>현금지급명령서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지급명령한 내역이</u>----- &lt;삭제&gt;</p> <p>&lt;삭제&gt;</p> <p>5. (현행과 같음)</p> <p>6. <u>현금지급명령통지</u>-----</p> <p>-----</p> <p>-----</p> <p>-----</p> <p>7. ----- <u>현금지급명령통지</u>-----</p> <p>-----</p>
<p>제113조(통상지급명령통지의 반환) ① 군 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은 연도 내에 받은 통상지급명령통지 중 출납폐쇄기한까지 채권자의 현금지급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지급명령통지에 미청구의 도장을 날인하여 소관 지출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113조(<u>현금지급명령통지의 반환</u>) ① -</p> <p>-----</p> <p>--<u>현금지급명령통지</u>-----</p> <p>-----</p> <p>-----</p> <p>-----</p> <p>-----</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20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 금고사무에 관한 감독은 재무과장이 총괄한다.</p> <p>② 영 제106조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검사는 재무과장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120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 ----</p> <p>---<u>관리·감독</u>-----</p> <p>② <u>시행령 제50조</u>-----</p> <p><u>재무과장이 통합지출관의 협조를 받아</u>-----</p>
<p>제121조(계약의 체결) ①~② (생략)</p> <p>③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서식부터 별지 제50호서식까지를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u>행정자치부 예규</u>)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의한 신용카드를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구매의 경우에는 구입과지출결의서(별지 제48호서식)</p>	<p>제121조(계약의 체결)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p> <p>-----</p> <p>-----</p> <p>-----</p> <p>-----<u>(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u>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p>

현행	개정안
<p>대신에 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서식)를 사용한다.</p>	<p><del>품을 구매하는</del> ----- -----</p>
<p><b>제128조(회계문서의 날인)</b> ①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기타표지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 감시, 당직 또는 회의참석, 여비, <u>행사실비보상금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100만원 이하의 영수인은</u>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p>	<p><b>제128조(회계문서의 날인)</b> ① ----- ----- ----- ----- <u>행사실비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100만원 이하 영수인 및 채권자에게 계좌송금하는 경우 청구서는</u> -----</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b>제129조(과목경정등)</b> ① (생략) ② 실과장 및 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u>회계연도, 회계명, 세출과목</u>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폐쇄일전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과목경정 등 정정요구서(별지 제9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p>	<p><b>제129조(과목경정등)</b> ① (현행과 같음) ② ----- <u>같은 회계 내 세출과목</u>----- ----- -----</p>
<p>③~④ (생략)</p>	<p>③~④ (현행과 같음)</p>
<p><b>제130조(지출계산서)</b> ① 지출원은 분기마다 소관에 속하는 세출의 지출계산서(별지 제95호서식)를 작성하여 군 금고 또는 군 금고 지출대행점의 세출월계표(별지 제83호서식)을 붙여 분기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u>재무과장</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b>제130조(지출계산서)</b> ① ----- ----- ----- ----- <u>통합지출관</u>----- -----</p>
<p>② <u>재무과장</u>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수합하여 검토하고, 매분기말 다음 달 2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u>통합지출관</u>----- ----- -----</p>
<p><b>제131조(출납계산서)</b> ① 일상경비 출납원은 일상경비 출납계산서(별지 제96호서식)에 예금잔액 증명서를 첨부하여 매 분기말 다음 달 20일까지 해당 <u>지출원</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b>제131조(출납계산서)</b> ① ----- ----- ----- <u>통합지출관</u>----- -----</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b>제132조(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계산서)</b>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매년 취급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을 증명하기 위하여</p>	<p><b>제132조(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계산서)</b> --- ----- -----</p>

현행	개정안
<p>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계산서(별지 제97호 서식)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내에 <u>군수</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 ----- ----- <u>통합지출관</u>-----</p>
<p><b>제141조(부채관리관의 장부)</b> 부채관리관은 <u>영 제108조</u>에 따른 부채에 대하여는 부채관리관(총괄직 및 분임직을 포함한다)이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식과 조례,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p>	<p><b>제141조(부채관리관의 장부)</b> ----- <u>「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8조</u>----- ----- ----- -----</p>
<p><b>제150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b> ① <u>법 제91조의 규정</u>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과 군금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지출서식은 <u>법 제96조의2</u>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관리한다. 이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 전산입력자료에 대하여는 훼손, 손실, 멸실 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b>제150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b> ① <u>법 제46조</u>에 따른----- ----- ----- ② ----- ----- -- <u>「지방재정법」 제96조의2 및 시행령 제63조</u>----- ----- -----</p>
<p><b>제158조(국가 규정의 준용)</b>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u>「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u>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조례,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것은 국가의 예에 따른다.</p>	<p><b>제158조(국가 규정의 준용)</b> ----- ----- ----- <u>법 및 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u>----- ----- ----- -----</p>

[별지 제6호서식의 부표]

## 이 월 비 집 행 상 황 조 서

(단위:원)

구분 조직	예산과목					공사 기간	예산액	공 사 비			시 도 비			보 상 비 지장물이전비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기     타						계						불   용   액	12월 말 현   재 공   정	완   정 공   일	이월사유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 이 월 비 집 행 상 황 조 서

(단위 : 원)

구분 조직	예산과목					공사 기간	예산액	공사비			시도비			보상비 지장물이전비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기 타			계			불용액	12월말 현 재 공 정	완 공 예정일	이월사유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 과 오 납 금 현 금 반 환 명 령

원		부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채권자	성명		
	등록번호		
과 목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환부금	이자	총당	
지급금액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년 월 일			
담당자	담당	징수관	
관	항	목	

과오납금반환통지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채권자	성명		
	등록번호		
과 목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환부금	이자	총당	
지급금액			
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① 금고 귀하			

과오납금반환명령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채권자	성명		
	등록번호		
과 목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환부금	이자	총당	
지급금액			
위 금액을 본명령서 지참인 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① 금고 귀하			

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채권자	성명		
	등록번호		
과 목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환부금	이자	총당	
지급금액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반환 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			



[별지 제24호서식]

## 과 오 납 금 계 좌 반 환 명 령

금고 귀하  
원 부

송금과오납금반환통지

송금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채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과목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금액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년 월 일			
담당자	계장	징수관	
관	항	목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채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과목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금액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①
금고		귀하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채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과목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금액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①	
징수관		귀하	

## 과 오 납 금 현 금 반 환 명 령

원            부

과오납금반환통지

과오납금반환명령

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채권자	성명	
	등록번호	
과 목		
회계 년도	세목 코드	부과 번호
환부금	이자	총당
지급 금액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년 월 일		
담당자	담당	징수관
관	항	목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채권자	성명	
	등록번호	
과 목		
회계 년도	세목 코드	부과 번호
환부금	이자	총당
지급 금액		
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  금고 귀하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채권자	성명	
	등록번호	
과 목		
회계 년도	세목 코드	부과 번호
환부금	이자	총당
지급 금액		
위 금액을 본명령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  금고 귀하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채권자	성명	
	등록번호	
과 목		
회계 년도	세목 코드	부과 번호
환부금	이자	총당
지급 금액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		

## 과 오 납 금 계 좌 반 환 명 령

○ ○ 금 고 귀 하  
원 부

송금과오납금반환통지

송금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채 권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과 목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환부금	이자	총당	
지급금액			
은 행 명			
예 금 주			
계좌번호			
년 월 일			
담당자	담당	징수관	
관	항	목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채 권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과 목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환부금	이자	총당	
지급금액			
은 행 명			
예 금 주			
계좌번호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			
금고 귀하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채 권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과 목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환부금	이자	총당	
지급금액			
은 행 명			
예 금 주			
계좌번호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			
징수관 귀하			

[별지 제43호서식]

## 일 상 경 비 교 부 서

체 호 년 월 일  
 수 신 : 발 신 :

○○년도 세출예산을 다음과 같이 일상경비로 교부함.

(단위:천원)

구분 조직	예 산 과 목					예 산 액	집 행 액	일상경비 교부액			잔 액	비 고
	정 책	단 위	세 부	편성 목	통계 목			기교부	금회교부	합 계		

### 일 상 경 비 교 부 통 지 서

(단위:천원)

구분 조직	예 산 과 목					일 상 경 비 교 부 액			비 고
	정 책	단 위	세 부	편 성 목	통 계 목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누 계	

위와 같이 **일상경비를 교부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지출원    직          성명          인

          관서 일상경비 출납원    귀하

## 세 입 세 출 외 현 금 납 부 서

위 탁 서

납 입 통 지 서

영 수 증

제 호	년 도
세입세출외현금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고지부서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수납은행 : 은행	
(계좌번호 : )	

고지 번호	현금 종류	납부자	고지 금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고 귀하

제 호	년 도
세입세출외현금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고지부서	
납부자주소 :	
성 명 외 건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고지 번호	현금 종류	납부자	고지 금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출납원 귀하

결	담당자	출납원	계장	과장
재				

제 호	년 도
세입세출외현금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고지부서	
납부자주소 :	
성 명 외 건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은행 금고 인	

고지 번호	현금 종류	납부자	고지 금액

납부자 귀하

[별지 제48-2호서식]

###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계좌 입금용)

위탁서

납입통지서

영수증

세입세출외현금	
납부번호	20xx-xxxxxxx-xxxxxx
금	원(금 원)
정리구분 _____	
건명 _____	
현금 _____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xx은행	xxxx-xx-xxxxxxx
금고 귀하	

세입세출외현금	
납부번호	20xx-xxxxxxx-xxxxxx
금	원(금 원)
정리구분 _____	
건명 _____	
현금 _____	
납부자주소	
성명 _____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xx은행	xxxx-xx-xxxxxxx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세입세출외현금	
납부번호	20xx-xxxxxxx-xxxxxx
금	원(금 원)
정리구분 _____	
건명 _____	
현금 _____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납부자	
금고	
인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xx은행	xxxx-xx-xxxxxxx
납부자 귀하	

## (계좌·현금) 지급 명령

20 회계연도  
회계

결 재	지출원	금고

(단위 : 원)

연번	지급 명령 번호	명령구분	입금 유형	채권자	입금계좌		지급액	비 고
					금융 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								
합 계								

상기와 같이 발행하오니 송금(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재요령>

1. 명령구분란은 계좌지급명령, 현금지급명령, 계좌·현금지급명령을 표시.
2. 입금유형란에는 계좌이체, 대량이체, 원천징수, 고지서, CMS, 수표, 현금을 표시.
3. 비고란에는 세부사업명 또는 지급에 따른 사유를 기재.
4. 2매를 작성한 후 각각 결재하여 1매는 내부, 1매는 금고에 제출 보관함



## 일 상 경 비 교 부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년도 세출예산을 다음과 같이 일상경비로 교부함.

(단위:천원)

구분 조직	예 산 과 목					예산액	집행액	일상경비 교부액			잔 액	비 고
	정책	단위	세부	편성 목	통계 목			기 교부	금회 교부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 일 상 경 비 교 부 통 지 서

(단위:천원)

구분 조직	예 산 과 목					일 상 경 비 교 부 액			비 고
	정 책	단 위	세 부	편성 목	통계 목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누 계	
위와 같이 <u>일상경비를 교부하였음을</u> 통지함.									
년 월 일									
지출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 관서 일상경비 출납원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63호서식]

# 세 입 세 출 외 현 금 납 부 서

위 탁 서

납 입 통 지 서

영 수 증

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고지부서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수납은행 :    은행

(계좌번호 :                      )

고지 번호	현금 종류	납부자	고지 금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고 귀하

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고지부서

납부자주소 :

성    명                      외    건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고지 번호	현금 종류	납부자	고지 금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출납원 귀하

결 재	담당자	출납원	계장	과장

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고지부서

납부자주소 :

성    명                      외    건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은행                      금고                      인

고지 번호	현금 종류	납부자	고지 금액

납부자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m²]

##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계좌 입금용)

위 탁 서

납 입 통 지 서

영 수 증

세입세출외현금	
납부번호	20××-×××××-××× ×××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은행	××××-××-××××× ×××
금고 귀하	

세입세출외현금	
납부번호	20××-×××××-××× ×××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은행	××××-××-×××××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세입세출외현금	
납부번호	20××-×××××-×× ××××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납부자	
금고 인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은행	××××-××-××××× ×××
납부자 귀하	

※ 이 납부서는 가상계좌에 의한 납부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거창군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17~17
----------	---------

제출일자	2017. 3. 29.
제 출 자	재무과장

### 1. 제안이유

「지방회계법」 시행(‘16.11.30.)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지방회계법」 시행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 회계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등 강화를 위한 회계책임관 추가(안 제3조)
- 세출예산배정계획서 및 세출예산배정(재배정) 통지 대상에 통합지출관 추가(안 제18조, 제19조)
- 예산의 전용·이용·이체 결정, 예비비 사용 결정사항 통지 대상에 통합지출관 추가(안 제28조, 제29조)
- 징수결정 세입금 미수납액의 이월: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미수납액(안 제34조)
- 징수관은 모든 수입금 발생 시 본청 통합계좌에 입금(안 제39조)
- 지급명령의 명칭 변경(안 제43조)  
(현행) 3종(통상지급명령, 송금지급명령, 집합지급명령)  
(변경) 2종(현금지급명령, 계좌지급명령)
- 통합지출관의 “관서별 필요자금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0조의4)
- 출납사무의 검사 변경(안 제89조)  
(현행) 본청-재무과장, 그 밖의 관서-회계주무과장 또는 관서장  
(변경) 회계책임관이 지정하는 감사부서 공무원
-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계산서의 제출(안 제132조)  
(현행) 군수 ⇒ (변경) 통합지출관

## 나. 현행 제도의 문제점·미비점 보완사항 정비

- 납입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의 처리 신설(안 제34조의2)  
:출납공무원은 다음 회계연도의 첫 근무일까지 금고 수납
- 대가 지급 시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안 제54조)  
:채권자 확인 서류로 인감증명서 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추가
- 신용카드 사용 및 인터넷으로 물품 등 구매 시 일반지출결의서 사용  
(안 제121조)  
금액 변경: 100만원 이하 ⇒ 200만원 이하
- 채권자에게 계좌송금하는 경우 청구서의 날인을 서명으로 같음  
(안 제128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행자부 훈령)

###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7. 2. 17.~3. 9.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6) 도내 개정현황
  - 입법예고 중(4): 경남도, 밀양, 통영, 남해

## 월곡마을 종합개발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 38조, 『농어촌정비법』 제5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월곡마을 종합개발사업 시행계획 수립(승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04월 06일  
거창군수

1. 사업명 : 월곡마을 종합개발 사업
2. 사업의 목적 :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 삶의 질 개선,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공동체문화 회복을 위한 주민 역량강화
3. 사업구역 :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월곡마을
4. 마을규모 : 법정리 1개, 행정리 1개
5. 면적 : 221ha (농경지 28.9ha, 임야 157ha, 기타 35.1ha)
6. 가구·인구 : 39호(농가 27호, 비농가 12호), 인구 62명
7. 사업비 : 975백만원(국 682, 도 88, 군 205)
8. 사업의 효과 : 쾌적한 마을 정주환경 유지, 공동체 문화 회복 및 활동 활성화, 거창 남부권의 주요 연계 관광지로서의 자리매김
9. 사업기간 : 2015년 ~ 2017년(3년간)
10. 시행자 : 거창군수
11.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사업지역 주민의 적극적인이며 자발적인 참여의식과 유지관리 활성화를 위한 주체의식.
12. 주요사업개요
  - 가. 기초생활기반확충 : 달이실센터, 달이실 사랑방 조성, 달이실 마실길 정비
  - 나. 지역역량강화 사업 : 교육, 선진지견학, 컨설팅, 홍보, 마을경영지원 등
13. 세부사업계획이나 상세한 내용은 거창군청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농촌개발담당(☎940-8258)로 방문하시거나 문의하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21호선)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건설부 고시 제1971-383호(1971. 6. 26)로 최초 결정된 군계획시설(교통시설 :소로2-21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인가 고시합니다.

2017. 4. 12.

## 거 창 군 수

### 1. 사업개요

종류	사업명	위치		시행규모						시행위치		최초 결정일	비고
		읍	리	등급	류별	번호	연장(m)	폭(m)	면적(m <sup>2</sup> )	시점	종점		
도시 계획 시설	도시계획도로 (소로2-21호선)	거창	대동	소로	2	21	190	8.0	1,548	거창읍 대동리 757-1	거창읍 대동리 57	건설부고시 1971-383호 (1971.6.26)	

###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거창군수(도시건축과장)
-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3.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 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 예정일 : 2018. 12. 31

#### 4.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 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 자	
합계	-	-	-	4,352	1,548					
1	거창읍 대동리	757-1	도	628	66		거창군			
2	"	765-4	도	154	19		거창군			
3	"	757	대	185	1	거창군 거창읍 시장길 33-3	최민옥			
4	"	964-62	도	62	39		국(건설부)			
5	"	749-3	대	129	93	거창군 거창읍 강양5길 23	이상호			
6	"	756	대	139	58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756	윤정임			
7	"	749-12	답	214	6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684	김성출			
8	"	751-2	대	122	63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751-2	조병권 외1 인			
9	"	751-8	전	284	106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751-8	조경옥			
10	"	751-11	전	20	16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751-7	김정규			
11	"	751-5	대	213	102	거창읍 대동리 765 라일락아파트 이동202	박원제 외2인			
12	"	751-10	전	140	140		거창군			
13	"	751-22	전	15	1		거창군			
14	"	751-23	전	2	1		거창군			
15	"	759-8	대	175	1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75-25 (신암동)	정춘화			
16	"	749-16	답	63	63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동 225-2 강만현대아파트 202-2002	신기재			
17	"	751-20	도	171	8		거창군			
18	"	749-15	도	242	10		거창군			
19	"	749-6	답	177	167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동 225-2 강만현대아파트 202-2002	신기재			
20	"	62-6	전	497	497	거창군 거창읍 정장2길 31	김광옥			
21	"	57	전	720	91	거창군 거창읍 상동6길 17, 202호(유빌리지2차)	신용휘			



##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04. 12.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7길 29 외 3건(부여 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과(☎055-940-3311~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 도로명주소부여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25B 1L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8길 6	2016-04-20	2017-04-12	송정이란 마을이름 반영	
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30B 11L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7길 29	2016-04-20	2017-04-12	송정이란 마을이름 반영	
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103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양평2길 7	2009-04-01	2017-04-12	마을 앞의 큰 돌 그늘이 마을 에 이르러 음석이라 부르다가 뜻이 좋지 않다하여 양평으로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 된 두번째 도로	
4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봉계리 666-2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원기길 69-7	2009-04-01	2017-04-12	옛날 성초역에 따른 원(院)이 있어서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이 반영된 도로	

# 보 상 계 획 공 고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일원에 계획된 「가지리 교촌마을 도시계획도로(소로2-102호선)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상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하여 주시고 보상협의를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4. 5.

## 거 창 군 수

### 1.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 가지리 교촌마을 도시계획도로(소로2-102호선) 개설공사
- 나.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일원
- 다. 사 업 량 : 도로 개설 L=220.0m, B=8.0m
- 라. 사업시행자 : 거창군수

###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가. 토 지 : 거창군 거창읍 301-2번지 외 22필지
- 나. 물 건 : 편입 토지상에 소재한 지상물건 일체
- 다. 열람내용 : 사업구간 내 편입토지와 지상물건 등 확인 및 누락 여부
- 라. 보상조서 : 붙임문서 참조

### 3. 열람 및 이의신청

-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 부터 14일간
-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94)
- 다. 이의제기 :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열람기간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4. 보상협의 및 지급시기 : 열람 및 감정평가 후 개별통지 예정

#### 5. 보상방법 및 절차

-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우리군과 토지등 소유자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함.
- 나. 보상장소, 보상금액,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로 통지 예정임.

#### 6. 감정평가업자 선정

-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거창군이 선정하는 감정평가업자 이외에 토지소유자 및 경상남도지사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각1인을 추천할 수 있음.
- 나.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음.

#### 7. 기타사항

- 가. 보상조서 물건내역은 추후 분할측량 및 계획변경, 재조정,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음.
- 나.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함.
- 다. 본 신문 공고와 별도로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나 송달 불능 등으로 인한 미수령자에게는 본 신문공고로 송달에 갈음합니다.

○ 보상조서(토지)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거창읍 가지리	299-1	도	49	11	거창군					
2	거창읍 가지리	300-1	도	56	44	거창군					
3	거창읍 가지리	301-2	대	205	46	이*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 의도동 ***				
4	거창읍 가지리	301-1	대	93	93	정*수	대구 수성구 신매동 ***				
5	거창읍 가지리	302	대	60	60	이*용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				
6	거창읍 가지리	1719-9	도	3,130	597	국	건설부				
7	거창읍 가지리	303	대	228	40	정*수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				
8	거창읍 가지리	292-3	대	288	105	경상남도 향*재단	부산시 충무로 **				
9	거창읍 가지리	292-2	대	18	18	명*학원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				
10	거창읍 가지리	292-5	대	2	2	명*학원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				
11	거창읍 가지리	304-1	도로	14	14	김*길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				
12	거창읍 가지리	304-3	도로	20	20	김*길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				
13	거창읍 가지리	292-1	대	38	38	경상남도 향*재단	부산시 충무로 **				
14	거창읍 가지리	292-4	대	2	2	경상남도 향*재단	부산시 충무로 **				
15	거창읍 가지리	305-1	대	215	72	이*학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				
16	거창읍 가지리	289-2	대	360	6	윤*재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				
17	거창읍 가지리	288-3	대	397	23	경상남도 향*재단	부산시 충무로 **				
18	거창읍 가지리	305-3	전	38	25	박*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 동 **				
19	거창읍 가지리	288-4	대	53	53	경상남도 향*재단	부산시 충무로 **				
20	거창읍 가지리	349-14	임야	358	118	경상남도 향*재단	부산시 충무로 **				
21	거창읍 가지리	349-9	임야	1,521	289	경상남도 향*재단	부산시 충무로 **				
22	거창읍 가지리	285	전	4,175	140	경상남도 향*재단	부산시 충무로 **				
23	거창읍 가지리	349-10	전	1,944	201	경상남도 향*재단	부산시 충무로 **				

○ 보상조서(지장물)

순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1	거창읍 가지리	301-2	가옥	6.7*9.8	기와	65.7	m <sup>2</sup>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레	
	거창읍 가지리	301-2	창고 (부속사)	4*3.2+9.3* 4.9	슬레이 트	58.4	m <sup>2</sup>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레	
	거창읍 가지리	301-2	창고(가추)	슬레이트		12.0	m <sup>2</sup>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레	
	거창읍 가지리	301-2	담장	-		3.6	m <sup>2</sup>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레	
	거창읍 가지리	301-2	부속사	8.5*4	블록 기와	34.0	m <sup>2</sup>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레	
	거창읍 가지리	301-2	부속사	4.5*11	블록 스레트	49.5	m <sup>2</sup>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레	
	거창읍 가지리	301-2	수도	-		1.0	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레	
	거창읍 가지리	301-2	장독대	-		9.0	m <sup>2</sup>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레	
	거창읍 가지리	301-2	대문		철재	1.0	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레	
	거창읍 가지리	301-2	바닥	-		25.0	m <sup>2</sup>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레	
	거창읍 가지리	301-2	아궁이	-		1.0	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레	
	거창읍 가지리	301-2	수도대	-		6.0	m <sup>2</sup>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레	
	거창읍 가지리	301-2	대추나무	10년		2.0	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레	
	거창읍 가지리	301-2	제피나무	15년생		2.0	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레	
	거창읍 가지리	301-2	감나무	10년		2.0	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레	
2	거창읍 가지리	301-1	가옥		슬라브	81.0	m <sup>2</sup>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	정*수	
	거창읍 가지리	301-1	대문		문주, 슬라브	1.0	식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	정*수	
	거창읍 가지리	301-1	창고	3.5*3	블록 슬라브	10.5	m <sup>2</sup>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	정*수	
	거창읍 가지리	301-1	수도	-		1.0	식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	정*수	
	거창읍 가지리	301-1	주목	20년		1.0	주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	정*수	
	거창읍 가지리	301-1	화단	-		4.0	m <sup>2</sup>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	정*수	
	거창읍 가지리	301-1	계단		콘크 리트	7.0	m <sup>2</sup>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	정*수	
	거창읍 가지리	301-1	계단		벽돌조	5.0	m <sup>2</sup>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	정*수	
	거창읍 가지리	301-1	계단		타일	5.0	m <sup>2</sup>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	정*수	

	거창읍 가지리	301-1	피로티	-		5.0	m <sup>2</sup>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	정*수	
	거창읍 가지리	301-1	담장	6*1.7		10.2	m <sup>2</sup>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	정*수	
	거창읍 가지리	301-1	대문		알루 미늄	1.0	식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	정*수	
	거창읍 가지리	301-1	담장	3*1.5	벽돌조	4.5	m <sup>2</sup>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	정*수	
3	거창읍 가지리	301-1	목련	12년		1.0	주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	신*미	
	거창읍 가지리	301-1	연산홍	10년		1.0	주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	신*미	
	거창읍 가지리	301-1	장미	10년		5.0	주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	신*미	
	거창읍 가지리	301-1	무화과	10년		1.0	주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	신*미	
	거창읍 가지리	301-1	기타수목	10년		2.0	주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	신*미	
	거창읍 가지리	301-1	물건이전비	-		1.0	식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	신*미	
4	거창읍 가지리	302	가옥		벽돌조 싱글	66.0	m <sup>2</sup>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	이*용	
	거창읍 가지리	302	수도	-		1.0	식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	이*용	
	거창읍 가지리	302	바닥	-		6.0	m <sup>2</sup>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	이*용	
	거창읍 가지리	302	화장실		블록조	3.0	m <sup>2</sup>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	이*용	
	거창읍 가지리	302	창고(가추)		썬라 이트	10.0	m <sup>2</sup>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	이*용	
	거창읍 가지리	302	보일러실 (가추)	-		4.0	m <sup>2</sup>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	이*용	
5	거창읍 가지리	303	가옥	11.8*6.3	기와	74.34	m <sup>2</sup>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	정*수	
	거창읍 가지리	303	창고	3.2*2.2	블록 슬라브	7.04	m <sup>2</sup>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	정*수	
	거창읍 가지리	303	창고 및 화 장실		슬레 이트	14.0	m <sup>2</sup>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	정*수	
	거창읍 가지리	303	담장	5.2*1	블록	5.2	m <sup>2</sup>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	정*수	
	거창읍 가지리	303	가옥 (부속사)	6.1*5.2	기와	31.72	m <sup>2</sup>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	정*수	
	거창읍 가지리	303	바닥	-		36.0	m <sup>2</sup>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	정*수	
	거창읍 가지리	303	수도	-		1.0	식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	정*수	
	거창읍 가지리	303	장독대	-		3.0	m <sup>2</sup>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	정*수	
	거창읍 가지리	303	수도대	-		4.0	m <sup>2</sup>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	정*수	
	거창읍 가지리	303	대문		철재 슬라브	1.0	식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	정*수	

	거창읍 가지리	303	가추		스레트	6.1	m <sup>2</sup>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	정*수	
6	거창읍 가지리	292-3	가옥	12.3*5.7	기와	70.11	m <sup>2</sup>	부산광역시금정구금강로**	정*자	
	거창읍 가지리	292-3	담장	9.9*1 +12.3*1.6	블록	29.58	m <sup>2</sup>	부산광역시금정구금강로**	정*자	
	거창읍 가지리	292-3	담장		블록	1.8	m <sup>2</sup>	부산광역시금정구금강로**	정*자	
	거창읍 가지리	292-3	창고	3.3*2.8	블록 스레트	9.24	m <sup>2</sup>	부산광역시금정구금강로**	정*자	
	거창읍 가지리	292-3	창고	2.8*2.5+1.8 *2	블록 스레트	10.6	m <sup>2</sup>	부산광역시금정구금강로**	정*자	
	거창읍 가지리	292-3	수도	-		1.0	식	부산광역시금정구금강로**	정*자	
	거창읍 가지리	292-3	바닥	-		24.0	m <sup>2</sup>	부산광역시금정구금강로**	정*자	
	거창읍 가지리	292-3	대문		철재 문주	1.0	식	부산광역시금정구금강로**	정*자	
	거창읍 가지리	292-3	계피나무	12년		4.0	주	부산광역시금정구금강로**	정*자	
	거창읍 가지리	292-3	모과나무	100년		1.0	주	부산광역시금정구금강로**	정*자	
	거창읍 가지리	292-3	감나무	30년		1.0	주	부산광역시금정구금강로**	정*자	
	거창읍 가지리	292-3	기타수목	15년		3.0	주	부산광역시금정구금강로**	정*자	
7	거창읍 가지리	292-3	화장실		조립식	6.1	m <sup>2</sup>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	노*옥	
	거창읍 가지리	292-3	리모델링 비용		씽크대, 문,벽체 창고시 설등	1.0	식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	노*옥	
8	거창읍 가지리	304	창고	4.6*2.9	슬레 이트	13.34	m <sup>2</sup>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	김*길	
	거창읍 가지리	304	대문	4*2.2	벽돌 슬라브 문주	8.8	m <sup>2</sup>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	김*길	
	거창읍 가지리	304	담장	12.9*1.4	블록	18.06	m <sup>2</sup>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	김*길	
	거창읍 가지리	304	마당		콘크 리트	19.5	m <sup>2</sup>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	김*길	
	거창읍 가지리	304	물건이전비	-		1.0	식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	김*길	
	거창읍 가지리	304	우물	-		1.0	식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	김*길	
	거창읍 가지리	304	자두나무	20년		1.0	주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	김*길	
	거창읍 가지리	304	물앵두	8년		1.0	주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	김*길	
	거창읍 가지리	304	사철나무	20년		2.0	주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	김*길	



	거창읍 가지리	304	장미	15년		1.0	주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	김*길	
9	거창읍 가지리	289-2	가옥및 대문간	9*6	기와	54.0	m <sup>2</sup>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	윤*재	
	거창읍 가지리	289-2	담장	14.1*1.4	블록	19.74	m <sup>2</sup>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	윤*재	
	거창읍 가지리	289-2	단풍나무	30년		2.0	주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	윤*재	
	거창읍 가지리	289-2	사철나무	12년		1.0	주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	윤*재	
	거창읍 가지리	289-2	기타수목	30년		2.0	주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	윤*재	
	거창읍 가지리	289-2	기타수목	10~15년		3.0	주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	윤*재	
	거창읍 가지리	289-2	감나무	25년		1.0	주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	윤*재	
10	거창읍 가지리	305-1	가옥	12.1*5.8	기와	70.18	m <sup>2</sup>	경상남도 창원시안민동 **	이*원	
	거창읍 가지리	305-1	창고및 화장실	3.6*1.1+3.9 *1.5	슬레 이트	9.81	m <sup>2</sup>	경상남도 창원시안민동 **	이*원	
	거창읍 가지리	305-1	창고 (부속사)		슬레 이트	28.0	m <sup>2</sup>	경상남도 창원시안민동 **	이*원	
	거창읍 가지리	305-1	담장	1.8*2	블록	3.6	m <sup>2</sup>	경상남도 창원시안민동 **	이*원	
	거창읍 가지리	305-1	마당		콘크 리트	11.0	m <sup>2</sup>	경상남도 창원시안민동 **	이*원	
	거창읍 가지리	305-1	대문		철재 문주	1.0	식	경상남도 창원시안민동 **	이*원	
	거창읍 가지리	305-1	아궁이	-		1.0	식	경상남도 창원시안민동 **	이*원	
	거창읍 가지리	305-1	가추		스레 트	4.0	m <sup>2</sup>	경상남도 창원시안민동 **	이*원	
11	거창읍 가지리	288-4	가옥및 창고		슬레 이트	67.0	m <sup>2</sup>	경상남도 창원시마산 합포구 중앙남**	김*란	
	거창읍 가지리	288-4	창고 (부속사)	4.6*9.9	슬레 이트	45.54	m <sup>2</sup>	경상남도 창원시마산 합포구 중앙남**	김*란	
	거창읍 가지리	288-4	창고		슬레 이트	7.0	m <sup>2</sup>	경상남도 창원시마산 합포구 중앙남**	김*란	
	거창읍 가지리	288-4	창고(가추)	1*9.9	판넬	9.9	m <sup>2</sup>	경상남도 창원시마산 합포구 중앙남**	김*란	
	거창읍 가지리	288-4	담장		블록	1.7	m <sup>2</sup>	경상남도 창원시마산 합포구 중앙남**	김*란	
	거창읍 가지리	288-4	담장	5*1.7	블록	8.5	m <sup>2</sup>	경상남도 창원시마산 합포구 중앙남**	김*란	
	거창읍 가지리	288-4	수도	-		1.0	식	경상남도 창원시마산 합포구 중앙남**	김*란	
	거창읍 가지리	288-4	대문		철 파 이 프철재	1.0	식	경상남도 창원시마산 합포구 중앙남**	김*란	
	거창읍 가지리	288-4	바닥	-		35.0	m <sup>2</sup>	경상남도 창원시마산 합포구 중앙남**	김*란	
12	거창읍 가지리	288-3	담장	6*1.4		8.4	m <sup>2</sup>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	윤*세	

13	거창읍 가지리	287	가옥 (부속사)	10.3*4.6	슬레 이트	47.38	m <sup>2</sup>	거창군 거창읍 교촌길 **	최*자	
	거창읍 가지리	287	가옥(창고)	2.1*2.9+3.7 *4.4	슬레 이트	22.37	m <sup>2</sup>	거창군 거창읍 교촌길 **	최*자	
	거창읍 가지리	287	담장	4*1	블록	4.0	m <sup>2</sup>	거창군 거창읍 교촌길 **	최*자	
	거창읍 가지리	287	감나무	25년		1.0	주	거창군 거창읍 교촌길 **	최*자	
	거창읍 가지리	287	물앵두	20년		1.0	주	거창군 거창읍 교촌길 **	최*자	
	거창읍 가지리	287	대문		철재 문 주	1.0	식	거창군 거창읍 교촌길 **	최*자	
	거창읍 가지리	287	담장	10*1		10.0	m <sup>2</sup>	거창군 거창읍 교촌길 **	최*자	
	거창읍 가지리	287	바닥	-		12.0	m <sup>2</sup>	거창군 거창읍 교촌길 **	최*자	
	거창읍 가지리	287	가추	1.5*10.3	목재	15.45	m <sup>2</sup>	거창군 거창읍 교촌길 **	최*자	
	거창읍 가지리	287	동백나무	15년		1.0	주	거창군 거창읍 교촌길 **	최*자	
	거창읍 가지리	287	감나무	10년		1.0	주	거창군 거창읍 교촌길 **	최*자	
	거창읍 가지리	287	정화조	-		1.0	식	거창군 거창읍 교촌길 **	최*자	
	거창읍 가지리	287외	제피나무	30년		1.0	주	거창군 거창읍 교촌길 **	최*자	
	거창읍 가지리	287외	대추나무	25년		1.0	주	거창군 거창읍 교촌길 **	최*자	
14	거창읍 가지리	285	가옥(창고)	12.5*5	슬레 이트	62.5	m <sup>2</sup>	거창군 거창읍 교촌길 **	김*태	
15	거창읍 가지리	1719-9	가추(창고)	3.2*3.2	슬레 이트	10.24	m <sup>2</sup>	거창군 거창읍 교촌길 **	임*순	
16	거창읍 가지리	349-10	대나무	-		10.0	m <sup>2</sup>	거창군 거창읍 교촌길 **	거창 **고	
	거창읍 가지리	349-10	상수리나무	20년		2.0	주	거창군 거창읍 교촌길 **	거창 **고	
	거창읍 가지리	349-10	은행나무	25년		8.0	주	거창군 거창읍 교촌길 **	거창 **고	
	거창읍 가지리	349-10	기타수목			4.0	주	거창군 거창읍 교촌길 **	거창 **고	
	거창읍 가지리	349-10	울타리		철망	70.0	m	거창군 거창읍 교촌길 **	거창 **고	

## 『2017년 거창군 공동주택 미니 태양광 보급사업』 참여(시공)업체 모집 공고

거창군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2017년 거창군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공고 합니다.

2017년 4월 10일

거 창 군  수

### 1. 사업현황

- 가. 지원대상 : 거창지역 공동주택 거주자
- 나. 사 업 량 : 145가구 정도
- 다. 지원시설 : 가구별 미니 태양광 310W이하 1세트
- 라. 지원금액 : 용량별 설치비 단가의 80%범위 내외

### 2. 신청 자격

- 가. 한국에너지공단의 2017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태양광) 참여기업으로  
본사 또는 지사(영업소 및 대리점 제외)가 경상도내에 등록된 기업으로  
우리군 보급제품 설치기준 이상으로 충족할 수 있고 사후관리가 가능한 기업
- ※ 최근 3년간 지자체 미니 태양광 참여 실적이 있는 업체 우대

나. 보급제품 설치 기준

설치구분	설비기준
태양광 모듈	○아파트 층 사이(외벽) 또는 베란다에 설치가능한 제품 ○모듈 용량 합이 310W이하인 제품 ○태양광 모듈의 발전효율이 13%이상인 제품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 제품 또는 공인성능검사 인증제품일 것 ○모듈에 대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가입 제품
(마이크로) 인버터	○310W이하 계통연계형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 제품일 것 ○인버터에 대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가입 제품
모니터링 장치	○가정용 전력량계로 전기용품안전 인증 제품 ○전력량측정기에 대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가입 제품
모듈거치대	○구조안전진단결과 안정성이 입증된 제품 ○난간거치형의 경우 내풍압(정압/부압) 시험 성능검사 적합(35m/s이상) ○완성작업에 대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가입
전용 콘센트 설치	○베란다 또는 안전이 확보되는 장소에 높이 1.5m이상 확보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 커버를 설치하여 안전을 확보 단, 적정장소에 안전이 확보된 기존 콘센트를 활용할 수 있음
기타사항	○철골구조물(거치대 철판부위와 체결용 볼트, 너트, 절단가공 및 용접부위)은 스테인레스 자재 또는 녹방지처리 자재 ○태양광은 설치확인일로부터 5년간 무상 하자보수를 책임지며 하자이행보증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관련법령에 규정한 기준을 충족한 제품일 것

3. 신청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4. 10. ~ 2017. 4. 21까지(12일간)

※ 접수시간 : 09:00~ 18:00(토요일, 공휴일 제외)

나. 제출서류 :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참여(시공)업체 신청서(별지 제1호)

※ 제출서류는 A4 용지 책자 편철 7부 제출(선정 심사용)

다. 제출방법 : 방문접수

라. 접수처 : 거창군 경제교통과(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4. 선정 방법

가. 제출서류(별지 제1호 서식) 검토 후 심사 선정(2개 기업 이내)

나. 심사발표 : 개별통지 또는 우리군 홈페이지 게재

#### 5.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작성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시공업체 선정을 받은 경우 무효로 함

나. 기준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보류, 환수 또는 사업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라. 참여(시공)업체는 설치완료 확인일로부터 5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져야 하며, 하자이행보증증권, 생산물책임보험가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마. 참여(시공)업체는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완료후 사업성과보고서(주요성과, 문제점분석, 절감효과, 모니터링 진행사항, 개선방안 등)를 제출하여야 함.

사. 기타 사항

- 1)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제출한 정보는 신청자(군민)에게 공개될 예정임
- 2) 우리군 사정에 의해 지원시기와 사업량, 지원기준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3) 거창군청 경제교통과 에너지담당(☎055-940-3712)으로 문의 바람

붙임 : 거창군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참여(시공)업체 신청서



## 『가천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가천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04월 11일

거        창        군        수

### 1.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가천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
- 나. 위        치: 경남 거창군 가조면 장기리~ 기리 일원(가천천)
- 다. 사 업 내 용: 하천정비 L=4.83km
- 라. 사업시행자: 경상남도지사(수자원정책과장)

### 2. 보상내용

- 가. 토        지 : 경남 거창군 가조면 동례리~기리 일원
- 나. 물        건 :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상물건 일체
- ※ 토지 등 세부내역은 거창군청 건설과(하천담당)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 입법/공고/고시)에서 토지는 확인 가능함.

### 3. 열람기간·장소 및 이의신청

-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7. 04. 11. ~ 2016. 04. 30.
-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거창군청 건설과 하천담당(☎ 055-940-3642)
- 다. 이의신청 방법 :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

#### 4. 보상금 협의 및 지급시기 : 감정평가 후 개별통지

#### 5. 보상방법 및 절차

- 가. 보상산정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협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되, 협이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나. 보상시기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토지·물건별 보상금액 및 구비서류 등은 손실보상 협의요청과 함께 개별 통지할 계획입니다.
- 다. 보상방법 :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현금보상(계좌입금)
- 라.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 협의 및 보상지급 ⇒ 수용재결(보상협의 불성립 시) ⇒ 공탁 및 수용
- 마. 감정평가업자 추천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창군청 건설과(하천담당)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바.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로 같음하며, 이해관계인은 권리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 전부명령 등 권리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 6. 기타사항

- 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거창군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나. 보상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계획 및 열람 안내문 등을 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하오니 상기 열람 장소에서 토지 및 물건조서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 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개별 통지**합니다.
- 다.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편입면적(수량)과 지번은 추후 지적 분할 시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건설과 하천담당(☎ 055-940-36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보상조서(토지명세)

토지의 명세

연번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현실 적이용 상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명 (명칭)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계	96필지			125,410	28,152		70인		
1	가조면 동례리	1739- 187	답	답	3,157	32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793, 101동 902호(우두동, 두리미마을)	이호용		
2	가조면 동례리	1739- 202	답	답	3,405	117	경남 거창군 가조면 월포1길 28, 103동 302호 (황제골든빌)	이환정		
3	가조면 동례리	1739- 188	답	답	2,573	182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로45 길 37(화곡동)	민병조		
4	가조면 동례리	1739- 189	답	답	1,717	93	경남 거창군 가조면 동례리 577	이수룡		
5	가조면 동례리	1739- 190	답	답	4,352	80	경남 거창군 가조면 동례리 577	이수룡		
6	가조면 동례리	1739- 193	답	답	127	31	경남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305	박홍규		
7	가조면 동례리	1739- 45	답	답	2,437	1,058	경남 거창군 가조면 동례리 586	이호임		
8	가조면 동례리	1739- 254	답	답	5,539	538	경남 거창군 가조면 대초길 142-15	김정순		
9	가조면 동례리	1739- 61	답	답	426	121	경남 거창군 가조면 동례리 1103	이교달		
10	가조면 동례리	1739- 64	답	답	2,580	182	경남 거창군 가조면 동례리 1103	이교달		
11	가조면 동례리	1739- 66	답	답	829	138	경남 거창군 가조면 대초길 142-15	이유순		
12	가조면 동례리	1739- 68	천	답	2,562	179	경남 거창군 가조면 동례5길 100-6	김인순		
13	가조면 동례리	1739- 50	천	답	662	149	경남 거창군 가조면 동례5길 100-6	김인순		
14	가조면 동례리	327	천	제방, 천	645	645	대구시 중구 봉산동 234	김영호		
15	가조면 동례리	517- 10	답	답	1,123	26	경남 김해시 인제로 167-1, 203동 1605호(어방동 어방화인아파트)	이환덕		
16	가조면 동례리	326	천	제방	235	235	동예리	고치수		미등기
17	가조면 동례리	325-4	천	제방	15	15	경남 거창군 가조면 동례리 697 경남 거창군 가조면 동례리 1025	오임수(1/2) 이기성(1/2)		
18	가조면 동례리	517- 11	답	답	417	35	경남 김해시 인제로 167-1, 203동 1605호(어방동 어방화인아파트)	이환덕		
19	가조면 동례리	1739- 134	답	답	636	52	경남 거창군 가조면 동례리 697	김채현		
20	가조면 동례리	1739- 196	답	답	1,311	1,161	경남 거창군 거창읍 소만2길 62, 105동 307호	하용철		

토지의 명세

연번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현실 적이용 상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명 (명칭)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1	가조면 동례리	1739- 197	답	답	2,151	417	경남 거창군 거창읍 소만2길 62, 105동 307호	하용철		
22	가조면 동례리	287	임	답	1,535	1,296	경남 거창군 거창읍 소만2길 62, 105동 307호	하용철		
23	가조면 동례리	286	답	답	4,629	2,196	경남 거창군 거창읍 소만2길 62, 105동 307호	하용철		
24	가조면 동례리	610-5	답	답	2,028	2	경남 거창군 가조면 동례리 248-1	최재경	한국농어촌공사 (근저당)	
25	가조면 동례리	285-4	전	전	124	124	경남 거창군 거창읍 소만2길 62, 105동 307호	하용철		
26	가조면 동례리	283	답	답	4,275	121	경남 거창군 가조면 동례길 412-46	오웅택		
27	가조면 동례리	285-1	전	전	348	273	경남 거창군 가조면 동례길 412-46	오웅택		
28	가조면 동례리	201-6	답	답	874	29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771, 상동주공아파트 101-204	어윤현		
29	가조면 동례리	23-1	천	답	158	65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771, 상동주공아파트 101-204	어윤현		
30	가조면 동례리	23-4	천	제방	7	7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771, 상동주공아파트 101-204	어윤현		분필촉탁
31	가조면 동례리	6	임	답	882	279	대초리 229	김한현		
32	가조면 동례리	35	천	답	109	70	대초리	김시걸		미등기
34	가조면 동례리	34	천	답	142	92	기리	이병규		미등기
35	가조면 동례리	34-1	천	제방, 천	731	731	기리	이병규		미등기
36	가조면 동례리	33-1	천	답	855	170	기리	이정도		미등기
37	가조면 동례리	40-1	천	제방, 천	383	383	기리	박삼술		미등기
38	가조면 동례리	40	천	답	43	43	기리	박삼술		미등기
39	가조면 동례리	39	천	천	1,021	1,021	일부리	김채환		미등기
40	가조면 동례리	2	임	제방, 임, 답	3,727	2,219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대초 리 242	김한민		미등기
41	가조면 대초리	699- 147	답	답	2,987	41	대구 북구 태전동 1075-10, 우방미진타운 102-203	박상근		
42	가조면 대초리	699- 148	답	답	1,703	32	동례리 576	이영목		
43	가조면 대초리	656-2	답	답	535	22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237-49, 신성하이츠빌라 비-402	하용윤		

토지의 명세

연번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현실 이용 상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명 (명칭)	권리의 종류 및 내용	
44	가조면 대초리	671	답	답	1,294	1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237-49, 신성하이츠빌라 비-402	하용윤		
45	가조면 대초리	479	답	답	2,380	176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빛가람동)	한국농어 촌공사		
46	가조면 대초리	480	답	답	3,040	77	대구 서구 내당동 463-5 광장 타운 107동 209호	김한기		
47	가조면 대초리	699- 65	천	답	1,386	670	경남 거창군 거창읍 소만2길 62, 105동 307호	하용철		
48	가조면 대초리	699- 62	답	답	2,447	406	경남 거창군 가조면 동례리 586	이호임		
49	가조면 대초리	370-6	천	제방	36	36		김쾌능		미등기
50	가조면 대초리	778	답	답	3,617	1,171	경남 거창군 가조면 대초리 245	김타석		
51	가조면 대초리	360-2	천	제방, 답	482	482		김병억		미등기
52	가조면 대초리	361-2	답	제방	9	9	경남 거창군 가조면 대초리 276	김한기		
53	가조면 대초리	359-2	천	제방, 답	106	106		김시정		미등기
54	가조면 대초리	358-2	천	제방, 답	307	307		김시정		미등기
55	가조면 대초리	357-2	천	제방, 답	226	226	일부리	이상도		미등기
56	가조면 대초리	356-2	천	제방, 답	167	167		노하용		미등기
57	가조면 대초리	225	천	제방, 답	314	314	경남 거창군 가조면 대초리 244	김동석		
58	가조면 대초리	192-1	답	도로	94	4	경남 거창군 가조면 대초리 280 경남 거창군 가조면 대초리 275	김한희(1/2) 김교석(1/2)		
59	가조면 대초리	407-2	답	잡	27	27	부산 금정구 남산동 388-1, 국제그린파크 1405호	김성찬		
60	가조면 대초리	192	답	제방	325	325		김상국		미등기
61	가조면 대초리	407	답	답	1,938	771	경남 양산시 양주로 94, 206동 1003호(남부동, 양산신도시아파 트청어람)	김대균		
62	가조면 대초리	193-1	답	제방	98	98		김한수		미등기
63	가조면 대초리	193-2	천	제방	142	142		김한수		미등기

토지의 명세

연번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현실 이용 상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명 (명칭)	권리의 종류 및 내용	
64	가조면 대초리	201-2	천	제방	411	411	거창읍 상동	임을안		미등기
65	가조면 대초리	202	천	제방, 천	826	826		김시평		미등기
66	가조면 대초리	200-2	천	제방	50	50	일부리	김판점		미등기
67	가조면 대초리	406	답	답	1,249	500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26-12	김연석		
68	가조면 대초리	199	천	제방, 천	464	464	경남 거창군 가조면 대초리 288	장외순		
69	가조면 대초리	198-2	천	제방, 천	439	439	경남 창원시 대신면 제동리 354-42	김갑근		
70	가조면 대초리	397	답	답	1,726	441	경남 거창군 가조면 대초리 244	김도석		
71	가조면 대초리	204-2	천	제방, 천	1,911	1,911	경남 거창군 가조면 대초리 301	김부권		
72	가조면 대초리	397-1	답	잡	124	34	경남 거창군 가조면 대초리 244	김도석		
73	가조면 대초리	210	천	제방	10	10		조개		미등기
74	가조면 대초리	396-1	구	잡	100	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동 43-1	김한렬		
75	가조면 대초리	392	답	답	1,463	64	부산 중구 부평동4가 45, 향원부평타워-801	이미희		
76	가조면 대초리	393	답	답	775	39	부산 중구 부평동4가 45, 향원부평타워-801	이미희		
77	가조면 대초리	396	답	답	2,372	139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동7길 89-6	김용근		
78	가조면 대초리	713-7	답	답	1,379	266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동로 21-20, 202동 1305호 (복수동 초록마을2단지)	김필상		
79	가조면 대초리	714-8	답	답	832	12	경기 군포시 금정동 849, 주공 아파트 113동 701호	김한규		
80	가조면 대초리	714-9	답	답	1,862	402	경남 거창군 가조면 대초리 549-1	김정수		
81	가조면 대초리	715-8	답	답	5,777	70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141-19, 규일주택 301호	김성찬	근저당 (동거창농협)	

토지의 명세

연번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현실 적이용 상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명 (명칭)	권리의 종류 및 내용	
82	가조면 대초리	716-6	답	답	1,075	10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771, 상동주공아파트 101-204	어윤현		
83	가조면 기리	475	답	답	3,879	85	경북 포항시 남구포스코대로 154, 101동1104호(대잠동 대우 아파트)	김진욱		
84	가조면 기리	476	답	답	1,206	45	경남 거창군 가조면 기리 651-1	김정임		
85	가조면 기리	477	답	답	1,816	63	경남 거창군 가조면 대초길 108-5	박정남		
86	가조면 기리	501-1	천	제방, 답	1,224	1,224	경남 거창군 가조면 대초길 108-5	박정남		
87	가조면 기리	576	천	제방, 답	1,708	154		신익성		미등기
88	가조면 기리	1559- 11	천	제방	125	10	경남 거창군 가조면 기리 620	이월갑		
89	가조면 기리	561	답	답	1,366	6	경남 거창군 가조면 지산로 1212-16	도용숙	근저당 (가조농협)	
90	가조면 기리	562	답	답	739	18	경남 거창군 가조면 지산로 1212-16	도용숙		
91	가조면 기리	564	답	답	1,872	52	서울 구로구 개봉동 476 한마 을아파트 111-1103	박귀용		
92	가조면 기리	565	답	답	2,168	6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301 효자촌 507-704	어상욱		
93	가조면 기리	566	답	답	1,104	31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45-15	정규선		
94	가조면 기리	567	답	답	949	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45-15	정규선		
95	가조면 기리	568	답	답	620	20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771, 상동주공아파트 101-204	어윤현		
96	가조면 기리	569	답	답	1,359	44	경남 거창군 가조면 기리 451	이재철		

# 보 상 계 획 공 고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268번지 일원에 계획된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 3단계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 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상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하여 주시고 보상협약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04. 12.

## 거 창 군 수

### 1.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 3단계 조성사업
- 나. 위 치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268번지 일원
- 다. 사 업 량 : 매립면적 19,550㎡(매립용량 209,900㎡)
- 라. 사업시행자 : 거창군수

###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가. 토 지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산142-1번지 등 11필지
- 나. 물 건 : 편입 토지상에 소재한 지상물건 일체
- 다. 열람내용 : 사업구간 내 편입토지와 지장물건 확인 및 누락 여부 등
- 라. 보상조서 : 붙임문서 참조

### 3. 열람 및 이의신청

-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거창군청 환경과(055-940-3502)
- 다. 이의제기 :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열람기간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4. 보상협의 및 지급시기 : 열람 및 감정평가 후 개별통지 예정

#### 5. 보상방법 및 절차

-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우리군과 토지등 소유자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함.
- 나. 보상장소, 보상금액,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로 통지 예정임.

#### 6. 감정평가업자 선정

-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거창군이 선정하는 감정평가업자 이외에 토지소유자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음.
- 나.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음.

#### 6. 기타사항

- 가. 보상조서 물건내역은 추후 분할측량 및 계획변경, 재조정,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음.
- 나.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함.
- 다. 본 신문 공고와 별도로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나 송달 불능 등으로 인한 미수령자에게는 본 신문공고로 송달에 갈음합니다.

○ 보상조서(토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자 이외의 권리관계인			비 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관계	
합계	경남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11필지		82,991	22,722	-	-	-	-		-
1	경남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산142-1	임	56,755	7,74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홍덕 중앙로 ***	김*일				
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산142-2	임	1,587	1,587	경남 거창군 남하면 가조가야로 ***	이*호				
3	경남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산143	임	298	298	경남 거창군 가북면 박암리 ***	장*운				
4	경남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산144-15	임	13,169	1,906	충남 아산시 권곡동 문화로 ***	박*철				
5	경남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산144-17	임	5,653	5,653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강변로9길 ***	박*균				
6	경남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263	전	1,150	1,150	경남 거창군 거창읍 모곡2길 ***	김*동				
7	경남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264	전	582	582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홍덕 중앙로 ***	김*일				
8	경남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265	답	555	555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홍덕 중앙로 ***	김*일				
9	경남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266	전	1,583	1,583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홍덕 중앙로 ***	김*일				
10	경남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267	잡	1,094	1,09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홍덕 중앙로 ***	김*일				
11	경남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267-1	답	565	565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	김*호				



○ 보상조서(물건)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물건				소유자		비고(사진)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주소	성명	
1-1	경남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산142-1	임	분묘	단장	1	기			
1-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산142-1	임	분묘	단장	1	기			
	경남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산142-1	임	비석	화강암	1	석			
1-3	경남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산142-1	임	분묘	합장	1	기			
	경남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산142-1	임	비석	화강암	1	석			
2-1	경남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산144-17	임	분묘	합장	1	기			
	경남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산144-17	임	비석	화강암	1	석			

\* 토지소유자와 분묘소유자의 불일치 등으로 해당 분묘에 이장 안내판을 설치하였으니 담당부서 관계자 연락처(☎055-940-35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 3단계 조성사업』**  
**보상계획 공고에 따른 의견서**

1.제 목		
2.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성 명(명칭)	
	주 소	
3.의 견		
4.기 타		
<p>『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2017. . .</p> <p style="margin-left: 100px;">         의견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p> <p><b>거 창 군 수 귀하</b></p>		
비 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보상계획 열람 공고

거창군에서 시행하는 『금곡마을 진입로(군도 5호선)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12일

### 거 창 군 수

#### 1. 사업개요

- 가. 사업명 : 금곡마을 진입로(군도 5호선) 정비공사
- 나. 위치 : 경남 거창군 위천면 남산리 일원
- 다. 사업내용 : 도로정비 L=120m, B=5.5~16m
- 라. 사업시행자 : 거창군수(건설과장)

#### 2. 보상내용

- 가. 토지 : 경남 거창군 위천면 남산리 일원
- 나. 물건 :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상물건 일체
- ※ 토지 등 세부내역은 거창군청 건설과(도로담당)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 입법/공고/고시)에서 토지는 확인 가능함.

#### 3. 열람기간·장소 및 이의신청

-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7. 4. 12. ~ 2017. 5. 12.
-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거창군청 건설과 도로담당(☎ 055-940-3552)
- 다. 이의신청 방법 :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

#### 4. 보상금 협의 및 지급시기 : 감정평가 후 개별통지

## 5. 보상방법 및 절차

- 가. 보상산정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협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되, 협의를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나. 보상시기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토지·물건별 보상금액 및 구비서류 등은 손실보상 협의요청과 함께 개별 통지할 계획입니다.
- 다. 보상방법 :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현금보상(계좌입금)
- 라.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 협의 및 보상지급 ⇒ 수용재결(보상협의 불성립 시) ⇒ 공탁 및 수용
- 마. 감정평가업자 추천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창군청 건설과(도로담당)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바.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로 같음하며, 이해관계인은 권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 전부명령 등 권리권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 6. 기타사항

- 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거창군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나. 보상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계획 및 열람 안내문 등을 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하오니 상기 열람 장소에서 토지 및 물건조서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 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개별 통지**합니다.
- 다.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편입면적(수량)과 지번은 추후 지적 분할 시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건설과 도로담당(☎ 055-940-35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상조서(토지명세)

토지의 명세										
연번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현실 이용 상황	전체면 적 (㎡)	편입면 적 (㎡)	관 계 인			비고
							성명또는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b>합계</b>	<b>56필지</b>			<b>4,110</b>	<b>1,569</b>				
1	위천면 남산리	971-26	도	도	75	14	국(농수산부)			
2	위천면 남산리	392-2 6	도	도	3,481	1,040	거*군			
3	위천면 남산리	392-8	답	답	224	224	이*철	거창군 위천면 남산리 398		
4	위천면 남산리	392-9	답	답	19	19	전*욱	서울 성북구 장위3동 149-8		
5	위천면 남산리	392-2	대	대	71	71	신*본	거창군 위천면 남산리 793		
6	위천면 남산리	392-19	도	도	64	64	거*군			
7	위천면 남산리	392-6	도	도	3	3	신*본	거창군 위천면 남산리 793		
8	위천면 남산리	971-2 5	도	도	173	134	국(농수산부)			

## 보상계획 열람 공고

거창군에서 시행하는 『원봉계~내당도로(농어촌도로 203호선)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12일

### 거 창 군 수

#### 1. 사업개요

- 가. 사업명 : 원봉계~내당도로(농어촌도로 203호선) 확포장공사
- 나. 위치 : 경남 거창군 고제면 봉계리 일원
- 다. 사업내용 : 도로 확포장 L=380m, B=1.0~1.5m
- 라. 사업시행자 : 거창군수(건설과장)

#### 2. 보상내용

- 가. 토지 : 경남 거창군 고제면 봉계리 일원
- 나. 물건 :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상물건 일체
  - ※ 토지 등 세부내역은 거창군청 건설과(도로담당)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 입법/공고/고시)에서 토지는 확인 가능함.

#### 3. 열람기간·장소 및 이의신청

-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7. 4. 12. ~ 2017. 5. 12.
-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거창군청 건설과 도로담당(☎ 055-940-3552)
- 다. 이의신청 방법 :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

#### 4. 보상금 협의 및 지급시기 : 감정평가 후 개별통지

## 5. 보상방법 및 절차

- 가. 보상산정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협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되, 협의회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나. 보상시기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토지·물건별 보상금액 및 구비서류 등은 손실보상 협의요청과 함께 개별 통지할 계획입니다.
- 다. 보상방법 :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현금보상(계좌입금)
- 라.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 협의 및 보상지급 ⇒ 수용재결(보상협의 불성립 시) ⇒ 공탁 및 수용
- 마. 감정평가업자 추천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창군청 건설과(도로담당)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바.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로 같음하며, 이해관계인은 권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 전부명령 등 권리권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 6. 기타사항

- 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거창군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나. 보상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계획 및 열람 안내문 등을 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하오니 상기 열람 장소에서 토지 및 물건조서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 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개별 통지**합니다.
- 다.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편입면적(수량)과 지번은 추후 지적 분할 시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건설과 도로담당(☎ 055-940-35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상조서(토지명세)

토지의 명세										
연번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현실 적이 이용 상황	전체면 적 (㎡)	편입면 적 (㎡)	관 계 인			비고
							성명또는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계	18필지			33,693	2,366				
1	고제 면 봉 계리	78	전	전	2,305	72	신*각	합천군 야로면 덕암리		
2	“	77-1	전	전	2,427	131	이*순	거창군 고제면 봉계리 357-5		
3	“	361-1	도	도	53	47	거*군			
4	“	1509	도	도	1,375	52	국(건설부)			
5	“	360-3	도	도	46	46	거*군			
6	“	360-1	답	답	1,858	27	백*경	거창군 고제면 원봉계길 70		
7	“	362-3	도	도	96	96	이*봉	고제면 봉계리 258		
8	“	363-2	도	도	274	274	거*군			
9	“	1478	구	구	10,268	22	국(농수산부)			
10	“	365-3	도	도	20	20	하*현	고제면 봉계리 260		
11	“	365-1	대	대	655	14	김*이	고제면 봉계리 365-1		
12	“	366-1	임	임	4,711	76	박*홍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양당을금길 4-30, 102동1008호(산호아파트)		
13	“	366-2	도	도	766	766	거*군			
14	“	1470	도	도	1,157	103	국(건설부)			
15	“	372-2	도	도	294	294	거*군			
16	“	371-1	전	전	992	81	하*구외1	고제면 봉계리 349		
17	“	372-1	임	임	3,726	181	변*규	봉산리		
18	“	166-4	임	임	2,670	64	신*덕	합천군 조계면 봉산리 206		



##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4. 7 .

### 거창군의회 의장

####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개정이유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인구증가를 위한 각종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책을 추진하면서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출산장려 지원대상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수혜범위를 확대(안 제6조제3항)
  - 당초: 출산장려금 및 태아·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은 출생일 및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 변경: 출산장려금 및 태아·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은 출생일 및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개월 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 태아·출생아 건강보험 만기환급금 수익자를 변경(안 제9조제3항제1호)
  - 당초: 거창군 귀속
  - 변경: 피보험자(출생아)의 부모

4. 입법예고기간 : 2017. 4. 7. ~ 2017. 4. 12. (6일간)

####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의회 의장(의회사무과,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편번호 50132)에게 서면이나 메일([hag112@korea.kr](mailto:hag112@korea.kr))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의회 의회사무과 **【☎055)940-806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6개월 이전부터”를 “1개월 전부터”로 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군에 환급 조치한다.”를 “군에 환급 조치하고, 군수는 환급금 전액을 피보험자 부모에게 지급한다.”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6조(지원대상 자격)</b> ①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원대상자는 사유발생일 현재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에 한정한다. 다만, 제5조제3호의 경우 가임여성에게 지원할 수 있다.</p> <p>② 제5조제5호의 지원대상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가정으로서 예방접종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p> <p>③ 제5조제6호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 같은 조 제7호 지원대상자 중 태아 건강보험은 임신확인일, 출생아 건강보험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b>6개월 이전부터</b>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에 출생신고를 한 사람으로 한다.</p> <p><b>제9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b> ① 읍·면장은 태아·출생아 건강보험 지원대상자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변동사항을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군수는 제6조의 지원대상 자격 상실 등 지원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지급을 중단한다.</p> <p>③ 태아·출생아 건강보험료 환수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태아·출생아 건강보험은 만기 환급형으로 협약업체에서는 만기 시점에서 만기해약금을 <b>군에 환급 조치한다.</b></p> <p>2.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기간 내에 다른 시·군·구로 진출 시 보험계약이 해지되며 그동안 군에서 지급한 보험료의 해약환급금은 군수입으로 귀속된다.</p>	<p><b>제6조(지원대상 자격)</b> ①-----</p> <p>-----</p> <p>-----</p> <p>-----</p> <p>-----</p> <p>-----</p> <p>②-----</p> <p>-----</p> <p>-----</p> <p>-----</p> <p>-----</p> <p>-----</p> <p>③-----</p> <p>-----</p> <p>-----</p> <p>-----</p> <p>----- <b>1개월 전부터</b> -----</p> <p>-----</p> <p><b>제6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①</b>-----</p> <p>-----</p> <p>-----</p> <p>-----</p> <p>②-----</p> <p>-----</p> <p>-----</p> <p>③-----</p> <p>-----</p> <p>1.-----</p> <p>-----</p> <p>----- <b>군에 환급 조치하고, 군수는 환급금 전액을 피보험자 부모에게 지급한다.</b></p> <p>2. -----</p> <p>-----</p> <p>-----</p> <p>-----</p>

#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셋째아이 이상 태아·출생아 건강보험 만기환급금 수익자 변경 (거창군 귀속 ⇒ 피보험자)
  - 거창군수가 환급받아 피보험자(출생아의 부모)에게 지급
- 관련조문 : 제9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제3항제1호

### 2. 비용추계의 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보험 협약업체인 KDB생명(주) 산출자료에 의함

#### 나. 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합계
총 비용		0	0	0	0	0	
세출	군비	74,000	77,000	60,000	92,000	103,000	
세입	군비	74,000	77,000	60,000	92,000	103,000	

### 3. 관련 의견

- 태아·출생아 건강보험은 만기 환급형으로 만기시점에서 변동금리 적용 등 만기환급금 차액 발생 가능성이 있음.

##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보험사가 만기환급금 전액을 군에 환급조치하고 거창군수는 환급금 전액을 피보험자 부모에게 지급
  - 2018년도 예산 확보액(예정) : 74,000천원(군비)

작성자 : 거창군 보건소장

## 관 련 법 령

### □ 「지방자치법」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97호, 2016.5.29. 타법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카. (생략)

####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6.(생략)

### □ 「지방재정법」

[시행 2017.3.30.] [법률 제14113호, 2016.3.29., 타법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7.16.>

## □ 「경상남도 저출산대책에 관한 지원 조례」

소관부서 : 여성가족정책관 [시행일 : 2015-01-01]

**제5조(출산장려금)** ① 도지사는 출산일 1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신생아의 부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② 도지사는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연도의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지원금액 및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출산장려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거창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4. 7.

거창군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 지원으로 거창군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과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 제2조)
- 지원 대상 규정(안 제3조)
  - 거창군에 소재를 둔 향교
- 지원 사업 규정(안 제4조)
  - 전통 문화예술교육사업, 문화행사 사업, 전통의례 사업
  - 그 밖에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 및 시설 등에 관련된 사업
- 사업비 지원 규정(안 제6조)



- 지원 신청 규정(안 제7조)
- 지원 결정 규정(안 제8조)

4. 입법예고기간 : 2017. 4. 7. ~ 2017. 4. 12. (6일간)

####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의회 의장(의회사무과,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편번호 50132)에게 서면이나 메일([hag112@korea.kr](mailto:hag112@korea.kr))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의회 의회사무과 **【☎055)940-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거창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부.

##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가 거창군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과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된 관학교육기관으로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거창군에 소재를 둔 향교로 한다.

제4조(지원 사업)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전통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강학 교육
2. 인성 교육
3. 예절 교육
4. 의례 교육
5. 문화예술 교육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문화행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와 관련된 전시 및 공연
2. 한시·한문 등의 경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전통의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향
2. 기로연, 향음주례, 향사례 등의 공동체 의례
3. 전통혼례, 성년례 등의 관·혼·상·제 관련 의례

④ 그 밖에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 및 시설 등에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업수행 장소) 사업수행의 공간을 향교와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이 초과될 경우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사업비 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신청)** ① 제3조의 지원대상자가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 사업비 산출내역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결정)**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군민의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지원 출처별 예산 사용의 투명성 여부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거창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 거창 향교 지원 및 육성에 따른 교육, 행사, 시설 지원에 필요한 비용
- 관련 조문 : 제6조(사업비 지원)

### 2. 비용추계의 결과

- 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합계
총 비용(a - b)	66	66	66	66	66	330
세출	국비	0	0	0	0	0
	도비	6.6	6.6	6.6	6.6	6.6
	군비	59.4	59.4	59.4	59.4	59.4
	소계(a)	66	66	66	66	66
세입	0	0	0	0	0	0
	0	0	0	0	0	0
	소계(b)	0	0	0	0	0

### 3. 관련 의견

-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 지원으로 인의예지충효를 실천하는 선조들의 사상을 배우고 전통문화를 계승하여 역사문화 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교육 및 행사 지원
  - 각종 교육 및 전통계승 행사 지원: 66,000천원/연간

작성자 : 문화관광과장

## 관 련 법 령

###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 2016.2.3.] [법률 제13962호, 2016.2.3., 일부개정]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2014.7.29.] [법률 제12354호, 2014.1.28., 제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 「지방재정법」

[시행 2017.3.30.] [법률 제14113호, 2016.3.29., 타법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자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7.16.>

## □ 「경상남도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07.09.] , (제정) 2015-07-09 조례 제 401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의 정신 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된 관학 교육기관으로 경상남도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 기본방향 및 목표
2.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3.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사업 발굴 및 운영
4. 그 밖에 향교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제4조(활성화 사업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향교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 사업
2. 향교 문화체험관광 및 문화행사 사업
3. 향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예절 사업

**제5조(사업비 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이 포함된 사업비 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교부결정의 취소)** 도지사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향교 활성화 사업비를 교부받은 자에게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거창군립공원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립공원위원회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4. 7 .

거창군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거창군립공원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개정이유

「자연공원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군립공원위원회 구성·운영 기준을 정비하고, 위촉위원에 군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사업자 등을 참여 하도록 하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함.

### 3. 주요내용

○ 군립공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정비(안 제2조)

- 위원회 구성인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조정함
- 위촉위원을 군립공원에 거주하는 주민·사업자 등 포함
- 특별위원을 공원구역 관할 읍·면장을 삭제하고, 공원구역안의 종교 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책임자 추가 및 특별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4. 입법예고기간 : 2017. 4. 7. ~ 2017. 4. 12. (6일간)

####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의회 의장(의회사무과,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편번호 50132)에게 서면이나 메일([hag112@korea.kr](mailto:hag112@korea.kr))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의회 의회사무과 **【☎055)940-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거창군립공원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거창군립공원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립공원위원회 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연공원법」 제20조”를 “「자연공원법」 제9조”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10인”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그 밖의 위원은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를 “그 밖의 위원은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군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사업자 등 이해관계인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는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3. 당해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책임자

⑤ 특별위원회는 당해 공원에 관한 안전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되며, 이 경우 특별위원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임기) 제2조에 따른 위촉위원과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 (목적) 이 조례는 「<u>자연공원법</u>」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u>10인</u> 이내의 위원과 특별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생략</p> <p>③ 기획감사실장, 행정과장, 농업축산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건축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u>그 밖의 위원은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u></p> <p>④ 다음 각호의 자는 특별위원이 된다.</p> <p>1. <u>당해 공원구역을 관할하는 읍장 또는 면장</u></p> <p>2. 생략</p> <p>3. <u>&lt;신설&gt;</u></p>	<p>제1조 (목적)----- 「<u>자연공원법</u>」 제9조-----</p> <p>-----</p> <p>-----</p> <p>-----</p> <p>-----</p> <p>제2조(구성)-----</p> <p>-----<u>15명</u>-----</p> <p>-----</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p> <p>-----</p> <p><u>그 밖의 위원은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군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사업자 등 이해관계인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u></p> <p>④ (현행과 같음)</p> <p><u>&lt;삭제&gt;</u></p> <p>2. (현행과 같음)</p> <p>3. <u>해당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책임자</u></p>

현 행	개 정 안
<p>⑤ <u>특별위원회는 당해 공원에 관한</u> <u>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u> <u>위원이 된다.</u></p> <p>제3조(임기) 제2조 제3항의 위촉위원 및 동조 제4항 제2호의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⑤ <u>특별위원회는 해당 공원에 관한</u> <u>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정하여</u> <u>위원이 되며, 이 경우 특별위원회는</u> <u>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u></p> <p>제3조(임기) 제2조에 따른 위촉위원과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 관 련 법 령

## □ 자연공원법

[시행 2016.12.27.] [법률 제14480호, 2016.12.27., 타법개정]

제9조(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제10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국립공원위원회를 두고, 시·도에 도립공원위원회를 두며, 군에 군립공원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공원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위원회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위원회 및 군립공원위원회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으로 지정되는 것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包括承繼人)을 해당 공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 □ 자연공원법시행령

[시행 2016.6.23.] [대통령령 제27245호, 2016.6.21., 타법개정]

제8조(군립공원위원회의 구성·운영기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군립공원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군립공원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9.30., 2010.10.1.>

1. 군립공원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목의 자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군수"라 한다)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나. 군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다.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특별위원은 다음 각목의 자가 된다.

가. 삭제 <2003.4.4.>

나. 당해 공원구역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다. 당해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책임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4. 특별위원은 그 자연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5. 위원장·부위원장의 직무, 위원·특별위원의 임기, 간사, 군립공원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립공원위원회에 준용한다.

##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4. 7 .

거창군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2. 제정이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신규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안 제5조)
- 거창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7조)
- 거창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안 제12조)
-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안 제18조)

4. 입법예고기간 : 2017. 4. 7. ~ 2017. 4. 12. (6일간)

##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의회 의장(의회사무과,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편번호 50132)에게 서면이나 메일([hag112@korea.kr](mailto:hag112@korea.kr))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의회 의회사무과 **【☎055)940-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1부.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지방공기업
2. 군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군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 참여 등)** ①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군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장 지역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제7조(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라 군이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제18조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18조 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
    2. 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互選)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④ 소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① 제7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군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 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쉬울 것
5. 제1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② 제7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실시설계(實施設計)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제7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대상에 대하여는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심의를 거친 경우
2. 재난 상황 등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
3. 구입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4.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5. 군수가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
6. 군이 인증한 우수공공디자인 및 표준형 디자인 제품을 사용한 경우

③ 위원회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이 군으로부터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군이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안전의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위원회의 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전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4장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 및 공공디자인의 진흥 등

제17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군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건축과 내에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한다.

② 군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군의 공공디자인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에게 협의할 수 있다.

③ 군 각 부서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① 군수는 군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방공공기관의 장에게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19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 등별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수립된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지역계획은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내용을 갖추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5조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창군 공공디자인 조례를 폐지한다.

[별표]

##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제18조 관련)

1. 대중교통·보행안전·편의·공급·녹지·안내·도로·임시시설물 등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가. 대중교통 정류소(버스·택시 승차대), 자전거 보관대, 주차 관련 시설물, 지하철 출입구, 환기구(흡·배기구), 교통량 검지기, (경)전철 관련 내외부 설치물 등
  - 나. 차량진입 방지용 말뚝, 장애인전용 유도블록, 보호 울타리, 가로등, 보행 유도등, 보안등, 공원등, 가드레일 등
  - 다. 벤치(의자), 가로 판매대, 피걸러(서양식 정자), 셸터(Shelter), 음수대, 환경미화원 대기소, 휴지통(재떨이 포함), 무인 정보단말기(키오스크), 공중전화, 정보제공 부스, 관광안내소, 생활정보지 배부함 등
  - 라. 맨홀, 소화전, 제설함 등 방재시설, 신호등 제어함, 분·배전함, 가로등 제어함, 상수도 제어함, 무선·휴대전화 기지국, 통신 안테나 등
  - 마. 가로수 보호대(가로수 보호덮개 포함), 가로 화분대, 분수대, 배수구 덮개 등
  - 바. 교통 표지판, 이정표, 지하철 노선도, 도로 및 건물·주차장·공공기관·자전거도로·보행 관련 방향 등 안내, 공원·관광·문화재 안내, 영상정보 관련 환경정보 표지, 도로교통 표지, 디지털 영상매체, 지정 벽보판(광고판), 장애인 정보제공시설, 그 밖의 각종 공공 안내사인, 현수막 게시대 등
  - 사. 교량(철교 포함), 고가차도(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 입체교차로, 지하(차)도(지상 들출부 포함), 터널, 생태통로, 회전형 교차로 등
  - 아. 보도 육교(엘리베이터 포함), 지하보도, 방음벽(시설), 방호 울타리, 중앙 분리대, 낙석 방지망, (높이 2m 이상의) 석축 및 옹벽 등
  - 자.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교차로, 공개·전면공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속도저감 시설, 횡단보도, 교통섬, 걷고 싶은 거리, 등산로, 산책로, 문화예술거리 등
  - 차. 공사용 출입구, 공사 안내판, 임시 가림벽 등
2. 공공미술 및 상징조형물 등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가. 환경조형물

- 나. 상징조형물(동상, 기념비 포함)
  - 다. 벽화
  - 라. 슈퍼그래픽
  - 마. 미디어아트 등
3. 공원, 휴양 공간, 광장 내 부속 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가. 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
  - 나. 휴양림, 수목원, 식물원, 생태원, 저류지, 하천부지의 공공 이용 공간, 하천·수변 공간, 가로 공간 등
  - 다. 광장,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분수광장 등
4. 공공청사, 문화/복지시설, 교통시설, 환경시설의 부속 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가. 공공기관 청사, 주민센터, 공공교육·연수시설, 소방서 등
  - 나. 박물관, 미술관, 복지시설(노유자시설 포함), 도서관, 의료시설, 체육관·경기장, 공연·전시장, 홍보·기념관, 청소년수련시설 등
  - 다. 관제센터, 터미널, 요금소, 공영주차장 등
  - 라. 상하수도시설, 쓰레기 소각장, 재활용 선별장, 음식물처리시설, 공중화장실 등
5. 안전, 위생, 복지, 편의, 관광용품 등 공공용품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상호 연계 및 사용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가. 안전장비, 피난장비, 구호장비, 교통차단장비 등
  - 나. 공중위생장비, 방역장비 등
  - 다. 장애인용품, 공공 영유아 용품 등
  - 라. 실내용 가구, 사무용품, 행사용품, 정보 안내용품 등
  - 마. 기념품, 공공공예품 등
6.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정체성 및 브랜드 제고를 위해 사용하는 시각이미지가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가. 공공시설물에 포함되는 정보디자인[정보체계, 그림문자(픽토그램), 지도, 서체 등]
  - 나. 도시브랜드 확립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상징이미지[단체 상징(CI), 브랜드 상징(BI), 캐릭터, 고유 문양(엠블럼), 서체 등]



# 관계 법령

##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별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제9조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변경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할 지역의 해당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국가기관 등의 장은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며,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는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제4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안내 및 제안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지역위원회)** ①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및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원칙)**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2.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지향한다.
3. 국가·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을 표현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4. 공공디자인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며,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
5. 공공시설물 등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과 적극적 협력체계를 통하여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한다.
6.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공청회)**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추진협의체)** ① 국가기관 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협조를 얻기 위하여 지역 주민, 시민단체, 관련 기업, 관계 전문가,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이하 "추진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는 추진협의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③ 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전문가의 참여)** ① 국가기관 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할 때 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하게 하거나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의 자격·업무범위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전담부서의 설치 및 인력의 배치)** 국가기관 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추진협의체의 구성 등)** ① 국가기관등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이하 "추진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공공디자인사업과 관련된 지역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은 추진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관계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전문가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